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10-2판 개정전후대비표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지침팀>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i</td><td>[일러두기]
○ 다른 지침과의 관계
-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함
* 예시 :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td><td>○ ----------
- ----------
* --- : 「자가격리자 일반진료 연계 지침」</td><td><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통합하여 삭제</td></tr>
<tr><td>iii</td><td><질병청 홈페이지 지침 관련 업로드 파일></td><td>[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 분장표]
<table>
<tr><th colspan="2">부서</th><th>업무</th></tr>
<tr><td colspan="2">상황관리팀</td><td>· 종합상황실(EOC) 운영
· 신고 접수·대응 관리, 통계산출
· 일일보고 및 상황 전파
· 1339 관리반 운영</td></tr>
<tr><td colspan="2">위기소통팀</td><td>· 언론소통(내·외신언론대응, 보도자료 배포 및 정례브리핑(온라인) 운영, 언론 모니터링 등)
· 국민소통(홍보 콘텐츠 개발·배포, 소통채널 운영, 대내 및 부처간 홍보 협력 등)
· 브리핑 메시지 개발 및 코로나19 관련 국민 인식조사 및 모니터링 등</td></tr>
<tr><td rowspan="4">상황총괄단</td><td>총괄조정팀</td><td>· 방대본 운영 총괄
· 회의체 관리(중대본, 합동회의 등)
· 중대본 등 지시사항 관리
· 시험응시자 격리유무 정보조회</td></tr>
<tr><td>해외출입국 관리팀</td><td>· 검역조치 총괄
· 통계산출, 국립검역소 상황 전파
· 입국자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 해외입국자 중 예방접종완료자 대응 사항</td></tr>
<tr><td>자원관리팀</td><td>· 국가 비상 의료자원 관리, 통계산출(국가비축물자)</td></tr>
<tr><td>보도대응팀</td><td>· 주간 브리핑 계획 및 보도참고자료 작성</td></tr>
<tr><td rowspan="2">방역지원단</td><td>환자관리·지침팀</td><td>· 환자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장례비 심사 및 비용 지원
·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및 격리해제 기준관련
·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제도 운영 및 관리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관리
· 방역수칙관리체계 전략 수립
· 방역수칙관리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과제 발굴 사업
· 방역수칙관리 지침 제·개정에 따른 부처별 세부지침 마련 지원</td></tr>
<tr><td>격리관리팀</td><td>· 임시생활(검사)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총괄
· 임시생활(검사)시설 운영 예산 편성 집행 결산
· 임소배정 계획수립 및 수송 계약 및 정산
·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및 검사현황 통계 취합·관리
· 자가격리자 관리
· 격리예외자 능동감시 관리</td></tr>
</table></td><td><환자관리지침팀>
(기존) 질병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첨부파일로 게시

실무 연락처 제외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 분장표를 지침에 재삽입</td></tr>
</table>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iv</td><td></td><td>
<table>
<tr><th colspan="2">부서</th><th>업무</th></tr>
<tr><td rowspan="4">역학조사
분석단</td><td>역학·분석
총괄팀</td><td>· 감염취약시설 현장대응팀 운영 및 역학조사관 파견 관련
· 역학조사 지원 등 행정인력 지원 관련</td></tr>
<tr><td>위기분석팀</td><td>· 국외 감염병 정보수집/분석/위험평가
· 국내 집단발생 감염 위험도 평가 및 상황분석</td></tr>
<tr><td>역학조사팀</td><td>· 현장역학조사 기술·자문 및 역학조사결과 정보관리
· 감염원, 감염경로 규명을 통한 역학적 특성 분석
· 환자·접촉자 조사(DUR, 전자출입명부, 카드정보)
· 환자·접촉자조사시스템(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등) 운영
· 접촉자 분류 시 예방접종완료자 대응 사항</td></tr>
<tr><td>정보분석팀</td><td>· 코로나19 감염재생산지수(Rt) 및 예측 전망 분석
· 코로나19 확진자분석용 기본DB 및 일일/주간 발생동향 등 기본분석
· 위중증, 사망, 격리해제 현황 파악 및 조사</td></tr>
<tr><td rowspan="4">진단분석단</td><td>진단총괄팀</td><td>· 진단검사 관련 국회대응, 대외협력 등 총괄관리
· 진단기준 마련 및 검사관련 지침 관리
· 지자체 및 민간의료기관 검사 관리
· 진단검사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td></tr>
<tr><td>진단검사운영팀</td><td>·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및 관리
· 임시선별검사소 및 선제검사 실적 총괄관리
· 선제검사 운영관리
· 검사비지원 총괄</td></tr>
<tr><td>검사분석팀</td><td>· 확인진단(real-time RT-PCR) 및 중화항체검사
· 바이러스 배양검사 및 특성 분석
· 전장유전자 NGS 및 변이 분석
· 검체운송 및 검체자원화 관리
· 변이 해외동향 분석</td></tr>
<tr><td rowspan="2">백신치료제개발
총괄단</td><td>백신개발추진반</td><td>· 코로나19 백신 국내외 개발동향 조사
· 코로나19 항체보유율 조사
· 코로나19 백신개발 민간지원
· 백신별 면역기간 등 조사연구</td></tr>
<tr><td>치료제개발추진반</td><td>· 치료제 개발 연구 및 국내외 연구, 임상 등 동향조사/분석
· 코로나19 치료제 민간지원 등 대외업무 지원
· 코로나19 변이주 관련 치료제 중화능 등 평가 분석
· 코로나19 범정부 실무추진위 치료제분과 운영</td></tr>
</table>
</td><td>〈환자관리지침팀〉
(기존) 질병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실무 연락처 제외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업무 분장표를 지침에 재삽입</td></tr>
</table>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 colspan="4">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td></tr>
<tr><td>9</td>
<td>1. 사례 정의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별도공지 시까지)
- 지역 구분 없이 검사 가능
<table>
<tr><th>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th><th>보건소 선별진료소</th><th>의료기관 선별진료소▶</th><th>임시선별검사소</th></tr>
<tr><td>1</td><td rowspan="2">유증상자, 무증상자 모두 무료검사</td><td>사례정의 해당자</td><td rowspan="2">모두 무료검사
(사례정의 해당자는 선별진료소 방문권고)</td></tr>
<tr><td>2단계 이상</td><td>모두 무료검사</td></tr>
</table>
▶ (1단계 이하) 사례정의 해당자는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본인 부담
▶ (2단계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모두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본인 부담
- 단,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의사·약사의 검사 권고를 받은 코로나19 유증상 환자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별도 진찰 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전액(진료비, 검사비) 무료
(신설)</td>
<td>1. --------
▶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
- ----------
<table>
<tr><th>보건소 선별진료소</th><th>의료기관 선별진료소▶</th><th>임시선별검사소</th></tr>
<tr><td>-----, ------
---------</td><td>모두 무료검사
(별도공지 시까지 한시적 운영)</td><td>---------
(----------
----------)</td></tr>
</table>
(삭제)
▶ ----------
- 단, ----------

------- 전액 무료(진료비 별도 청구 불가)
▶ 본인 필요에 의해서 검사 받는 경우(해외출국용, 출장·여행 등), 비급여 적용으로 검사비 본인부담</td>
<td>〈진단검사운영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구분 변경
본인 필요에 따른 경우 검사비 본인부담</td></tr>
</table>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11	1. 개요 (신설)	1.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보건의료위기대응시스템 內) : hcr.hira.or.kr (크롬 브라우저 사용) ▶ 신고된 확진환자에 대한 확진환자번호 부여 이후 동 시스템에 명단 반영되며(매일), 시도 병상배정반에서 첫 병상배정결과를 입력(오입력 건 수정 필수)한 이후 보건소(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에서 각각 순서에 따라 (격리시작, 격리해제, 전원, 사망, 치료제)정보 관리 필수 ▶ 코호트 격리 : 해당 발생지역의 보건소(자가격리)로 입력 참고자료 [부록 3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11	(신설)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14	4. 확진환자 신고·보고 (신설)	4. ----------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15	5. 확진환자 사망 신고·보고 (신설)	5. ----------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 colspan="4">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td></tr>
<tr><td>17</td><td>1. 개요
○ (배경) 유럽·미국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 등 전 세계에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면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td><td>1. ---
○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 지속 추진</td><td>〈해외출입국관리팀〉
해외입국자 관리방안의 방향성 안내</td></tr>
<tr><td>17</td><td>2.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참조
▶ 해외입국자 중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은「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참조
(신설)</td><td>2. 일반적 관리방안
▶ ----------
(삭제)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table><tr><th>구분</th><th>진단검사</th><th>검사결과</th><th>조치사항</th></tr><tr><td rowspan="2">유증상자</td><td rowspan="2">입국장 또는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검역소 격리시설)</td><td>양성</td><td>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이송</td></tr><tr><td>음성</td><td>각 대상자별 무증상자 절차에 따름 (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는 완료한 것으로 봄)</td></tr></table>○ 검역단계 무증상자
<table><tr><th>구 분</th><th>PCR 음성확인서</th><th>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th><th>격리</th><th>추가 검사</th></tr><tr><td>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td><td>제출</td><td>보건소 (항만)검역소▶</td><td>10일간 자가격리</td><td>격리해제전 검사</td></tr><tr><td>단기체류외국인</td><td>제출</td><td>임시생활시설 (항만)검역소▶</td><td>10일간 시설격리 ((10日 임소비용 본인부담)</td><td>격리해제전 검사</td></tr></table>▶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부적합 포함)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항만입국자 PCR검사 방법
: 입국 후 1일차 검사는 검역소에서 실시, 추가검사는 관할 보건소 (또는 시설)에서 실시함</td><td>〈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통합하여 삭제

〈해외출입국관리팀〉
증상별 대응 절차 구분</td></tr>
</table>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18	가. 기관별 역할 1) 검역소 ○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받고, 격리통지서 발급 및 검사 대상자에 대한 검체 채취 등 수행 (신설) ▶ 채취된 검체 검사는 권역센터(진단분석과 실험실) 소관 실험실에서 수행 2) 보건소 ○ (자가격리 대상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통지서를 재발급하고 자가격리 장소에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 (시설격리 대상자) 시설 관할 보건소는 격리통지서를 재발급하고 지정 격리시설에서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시설격리 및 능동감시	나. ---------- 1) ----- ○ ---------- ▶ 출입국심사대에서 격리통지서 발급(법무부 행정지원) ▶ ---------- 2) ----- ○ (----------) ---------- ---------- 10일간 ---------- ○ (----------) ---------- ---------- 10일간 ----------	〈해외출입국관리팀〉 검역단계에서 PCR 음성확인서 확인 중이며, 법무부 행정지원 관련 출입국심사대에서의 격리통지서 발급 사항 안내 격리 및 감시기간 변경사항 적용
18	(신설)	다. 격리장소 이동 및 격리 조치 1) 격리 장소 이동 ○ 관할 지자체(자가격리) 또는 격리시설 관리주체(시설격리)가 이동조치 시행 2) 격리 조치 ○ (지자체)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 대상 행안부「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설치 및 자가격리 ▶ 자가격리 관련 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및 [부록 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적용 ○ (격리시설 관리주체) 단기체류외국인 대상 복지부「모바일 자가진단앱」설치 및 시설격리 ▶ 상세사항은「입국자 임시생활시설(검사시설) 관리·운영지침」참조	〈해외출입국관리팀〉 일반적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격리면제자 장소 이동/격리 조치 사항과 같이 동일한 방향의 관리 안내 (이전 무증상자 조치 부분 활용)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19</td><td>(신설)</td><td>라. 기타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
○ (고위험국가)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국가별 임시생활시설 검사 및 임시생활시설 격리 등 관리 강화
▶ 상세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시·도/시·군·구) 자가격리장소 방문 및 적정성 검토, 주 1~2회 의무 현장 점검 실시 등
▶ 외국인 중 무단이탈 등 격리조치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 지자체에서는 [부록 14]를 참조하여 외국인의 인적사항, 위반사항 등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공문 통보
참고자료 [부록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부록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td><td>〈해외출입국관리팀〉
기타 강화된 방역관리 조치 안내</td></tr>
<tr><td>20</td><td>(신설)</td><td>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방안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 “2. 일반적 관리방안 →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절차와 동일
○ 검역단계 무증상자
<table>
<tr><th>구 분</th><th>PCR 음성확인서</th><th>입국 후 1일차 진단검사</th><th>격리</th><th>추가 검사</th></tr>
<tr><td>국내 예방접종완료자
*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 필요</td><td>제출</td><td>보건소</td><td>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유지 (수동감시)</td><td>6~7일차 진단검사 실시</td></tr>
<tr><td>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필요</td><td>제출</td><td>보건소</td><td>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유지 (수동감시)</td><td>6~7일차 진단검사 실시</td></tr>
</table></td><td>〈해외출입국관리팀〉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안내</td></tr>
</table>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0	(신설)	▶ 항만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검사 : 하선 전에 검역소에서 PCR검사 실시, 입국 후 6~7일차 추가 검사는 보건소에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격리 면제 가능 : ①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일 것(접종완료 후 2주 경과),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 입국 시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 등으로 접종 이력 증빙 필수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주기적으로 별도 통지 : 공문 또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내 공지사항)	〈해외출입국관리팀〉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안내
20	(신설)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 (검역소)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와 PCR음성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예방접종완료자 여부 확인(본인 입증 책임) - (접종 이력 확인) 검역대에서 입국자가 제출한 예방접종증명서 등 확인	〈해외출입국관리팀〉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관련 기관별 역할 안내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1	(신설)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접종 이력 확인 방법 :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확인(배지 불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접종 이력 확인 방법 : COOV(쿠브)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 확인 - (출발국가 확인)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해당 여부 확인 - (식별표시) 상기 조건 충족시 입국자 여권에 '접종완료자' 스티커 부착 ○ (특별입국부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 확인 ○ (출입국심사대) 여권에 '접종완료자' 스티커가 부착된 입국자에 대해 격리통지서 미발급 및 관련 시스템에 '예방접종완료자'임을 등록 ▶ 공항 입국자의 경우, 특별입국절차 간소화 운영 중 - 적용대상 : 공항 입국 격리제외자▶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체류자격이 A1(외교), A2(공무), 격리면제서 소지자 - 입국시 자가격리앱 설치, 전화수신 확인, 검역확인증 발급 적용 제외 ▶ 체류자격이 A1 · A2 이거나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대상의 경우, 임시생활시설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를 받고 자가진단앱은 설치함 ▶ 입국시 접종 이력을 증빙하여 격리면제가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앱 · 자가진단앱 모두 미설치	〈해외출입국관리팀〉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관련 기관별 역할 안내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1	(신설)	2) 보건소 ○ (입국자 확인)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입국자 정보 및 접종 이력 확인 ○ (PCR검사)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6~7일차 PCR검사 실시 ▶ 입국 후 1일차 또는 6~7일차 PCR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까지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실시 ○ (관리방법 안내)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교부 참고자료 [부록2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	〈해외출입국관리팀〉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관련 보건소 역할 안내
21	(신설)	다. 자가 이동 방법 ○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가능한 자차 이용 권고.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동 중 다른 장소를 방문하지 않고 자택으로 바로 귀가	〈해외출입국관리팀〉 국내 및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관련 보건소 역할 안내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22</td><td>(신설)</td><td>라. 해외 접종이력 등록
○ 대응 절차
<table>
<tr><th>구 분</th><th>입국시</th><th>접종 이력 등록</th><th>증명서 발급 (보건소)</th><th>등록 후</th><th>재입국시</th></tr>
<tr><td>해외예방접종완료 내 · 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td><td>격리면제 (자가진단앱 설치)</td><td>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td><td>예방접종확인서</td><td>격리면제 유지</td><td>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td></tr>
<tr><td>해외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td><td>격리 (자가진단앱 설치)</td><td>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td><td>예방접종확인서</td><td>격리 유지 (입국후 10일간 격리)</td><td>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td></tr>
<tr><td>해외예방접종완료 외국인(외국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td><td>격리 (자가진단앱 설치)</td><td>접종이력 등록 불가</td><td>-</td><td>-</td><td>격리대상 (격리면제서 소지시 격리면제 가능)</td></tr>
<tr><td>국내1회+국외 1회 내 · 외국인</td><td>격리 (자가진단앱 설치)</td><td>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등록 즉시 격리면제)</td><td>예방접종증명서</td><td>격리면제 전환 (자가격리앱 삭제)</td><td>격리면제 (격리면제서 불필요)</td></tr>
</table>
▶ 격리면제서 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 · 외국인
: 입국 후 1일차, 6~7일차 PCR검사 실시, 등록 즉시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 격리면제서 미소지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
: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등록 즉시 확진자 밀접접촉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되나, 격리면제서가 없기 때문에 입국 후 10일간 격리는 하여야 함
▶ 국내1회+국외 1회 접종완료 내 · 외국인
: 입국 후 1일차, 6~7일차 PCR검사 실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하게 등록되기 때문에 등록 즉시 격리면제자로 전환 가능함</td><td>〈해외출입국관리팀〉
해외 접종이력 등록 등 대응 절차 안내</td></tr>
</table>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23</td><td>(신설)</td><td>4.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중수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 참조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 “2. 일반적 관리방안 → 가. 증상별 대응 절차 → 검역단계 유증상자” 절차와 동일

○ 검역단계 무증상자

▶ 항만으로 입국하는 격리면제서 소지자(지방해수청 심사, 검역소 발급) : 선박 승무원(선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며, 입국 전 검역소에서 실시한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격리면제 가능

▶ 6~7일차 추가 검사는 미실시, 자가진단앱 설치</td><td>〈해외출입국관리팀〉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 안내</td></tr>
</table>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3	(신설)	나. 기관별 역할 1) 질병관리청, 법무부 ○ (검역소) 입국 검역 시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개인별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와 PCR음성확인서, 격리면제서 등을 제출받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분류 ○ (출입국심사대) 격리면제서를 제출받고, 관련 시스템에 '격리면제서 소지'임을 등록 ○ (임시생활시설)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미접종자'에 대해 진단검사 실시 ▶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검사 실시 ▶ 격리면제서 소지자 중 미접종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해외출입국관리팀〉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 관련 기관별 역할 안내
24	(신설)	2) 보건소 ○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증상 유무를 입력하며 증상 입력 시 보건소로 명단 통보 ▶ 앱 미설치자는 별도 방법으로 통보함	〈해외출입국관리팀〉 해외입국 시 격리면제서 소지자 관리 관련 보건소 역할 안내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4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 격리면제자는 검역단계에서 “모바일 자가진단앱” 설치 ▶ 격리면제자 관련 사항은 “[부록 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적용 1) 유·무증상자 조치 가) 검사결과 양성 ▶ “나. 격리대상자 관리방안 → 1) 유증상자 조치” 절차와 동일 나) 검사결과 음성 ○ “모바일 자가진단앱”에 증상 유무를 입력하며 증상 입력 시 보건소로 명단 통보 ▶ 앱 미설치자는 별도 방법으로 통보함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삭제) ▶ ---------- (삭제)	〈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부분을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보다 앞으로 이동 및 수정
24	◆ 격리면제자 (생략)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생략) (신설) ⑥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	◆ ------- ② ------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 ------- ⑤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 무증상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 입국시 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로 증빙 가능한 경우 ⑥ ---------- ----------	〈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부분을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보다 앞으로 이동 및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 반영
25	2)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무증상자만 해당) 가) 격리면제 기간 ○ 격리면제 기간은 격리면제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되, 최대 14일까지(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시 격리면제 기간 기재)	라. ---------- 1) --------- ○ ---------- --- 10일까지----------	〈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 부분 이동 및 상위 항목으로 조정 격리면제기간 조정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5	나) 격리대상 신고 및 자가/시설격리 전환 ○ 격리면제기간이 14일 이내인 경우 격리면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대상자는 즉시 출국 또는 즉시 격리면제서를 소지하고 동 면제서에 기재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자차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 대중교통 이용불가), 격리대상임을 신고 ○ 관할 보건소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자,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 전까지 자가/시설격리 및 능동감시 ▶ (예시) 9.1. 입국자의 격리면제 기간이 9.10일까지이고 9.11일 즉시 출국하지 않는 경우, 9.10. 이전까지 보건소에 신고하고 9.11~15일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2) ---------- ○ ---------- 10일 ---------- ○ ---------- ---------- 10일이 ---------- ▶ (---) ---------- 9.5일까지이고 9.6일 ---------- 9.5일 이전까지 ---------- 9.6~11일까지 ----------	〈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 부분 이동 및 상위 항목으로 조정 격리면제기간 조정
25	다) 격리 장소 이동	3) ----------	〈해외출입국관리팀〉 항목/위치 조정 등
25	라) 격리 조치	4) -------	〈해외출입국관리팀〉 항목/위치 조정 등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6	나. 격리대상자 관리방안 ▶ 「검역 단계 (내·외국인) 확진자 치료병상 배정 절차」(중수본 환자병상 관리반, '20.7.6.) 참조 1) 유증상자 조치 ▶ 유증상자 중 PCR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 - 검역소에서 확진된 환자는 국내사례가 아닌 해외유입사례로 분류됨 (검역통계로 집계됨) ▶ 유증상자 중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검사결과와 격리방법 안내 및 보건교육 가) 병상배정 요청 (1)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의 경우 (생략) (2) 경증 확진자의 경우(공항,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	5.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방안 ▶ ---------- (삭제) 가. ---------- 1) ---------- 2) ----------	〈해외출입국관리팀〉 상위 항목 조정 및 검역단계 확진자 관리 안내
27	(3) 경증 확진자의 경우(항만,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 (생략) 나) 병상배정 통보 (생략) 다) 환자 및 접촉자 명단 통보	3) ---------- 나. ---------- 다. ----------	〈해외출입국관리팀〉 상위 항목 조정
27	(신설)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8	3. 진단검사 ▶ 격리기간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현 시에는 즉시 진단검사 실시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단기체류 외국인)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6. -------- ▶ ---------- ○ ---------- - (----------) ---------- - (----------) 방대본 운영 임시생활시설에서 ---------	〈해외출입국관리팀〉 상위 항목 조정 및 단기체류 외국인의 진단검사 장소 명확화
28	4. 격리 해제	7. 격리해제	〈해외출입국관리팀〉 자구 수정 및 상위 항목 조정에 따름
28	(신설)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29	1. 확진환자 관리 (신설)	1. ---------- 가. 환자 초기 분류 ○ 초기 분류는 확진 후 신속하게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요인을 파악해 치료 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병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병상을 배정하는 것을 말함 ○ 초기 분류는 기초역학조사서와 입원/생활치료센터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자체 환자분류반이 아래의 흐름도에 따라 수행 ▶ 다만 분류표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환자 혹은 상황이 있는 경우 자문 의료진을 구성하여 상의 하에 결정 참고자료 [부록 6]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	〈환자관리지침팀/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환자 초기 분류에 대한 사항을 부록에서 본문으로 이동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9	(신설)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29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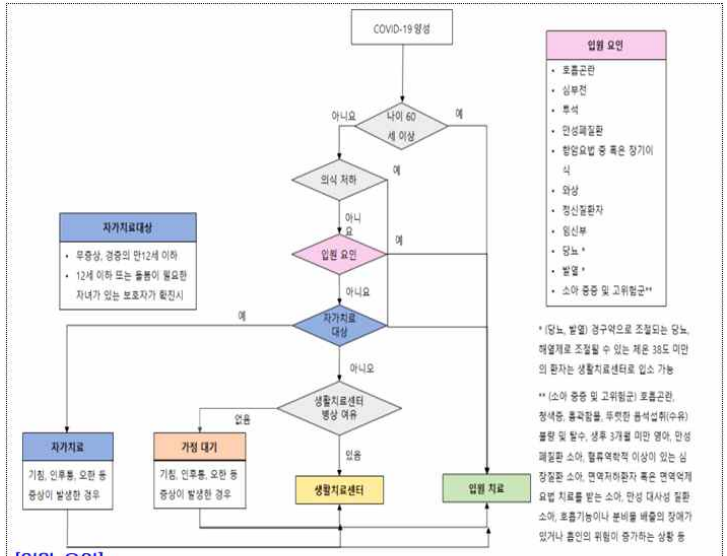 [입원 요인] ▸ **주의를 요하는 증상:** 의식저하, 호흡곤란(안정 시 또는 짧은 거리 이동에도 숨참),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발열* (38도 이상) ▸ **만성 기저질환:** 조절되지 않는 당뇨*, 만성신질환 또는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만성폐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등), 심부전증 또는 관상동맥질환, 항암화학요법 중인 암환자, 장기이식으로 인해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와상(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서 지내는 자) ▸ **특수상황:**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자, 임신부 * **해열제로 조절될 수 있는 체온 38도 미만, 경구약으로 조절되는 당뇨 등 간단한 의약처방 및 복용으로 조절 가능한 증상은 입원요인 아님**	[분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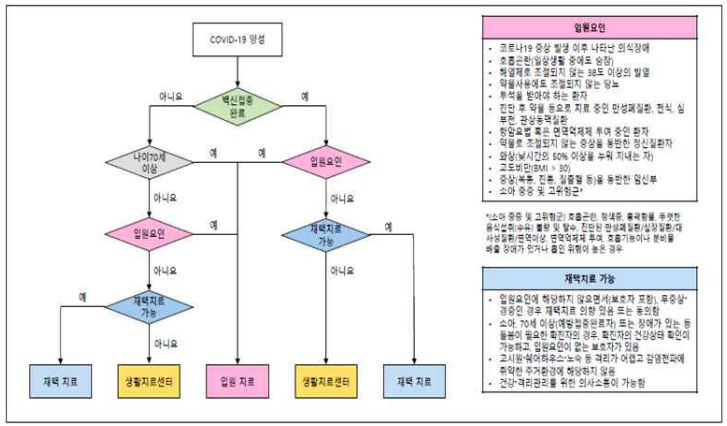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입원/생활치료센터 분류 개념도 현행화 〈환자관리지침팀〉 환자 초기 분류에 대한 사항을 부록에서 본문으로 이동
30	가.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	〈환자관리지침팀〉 순서 변경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30	2) 시·도 환자관리반 ○ (병상배정통보) 병상배정팀은 중증도 분류에 맞는 관할 지역 내 적정 병상 상황을 파악하여 병상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신설)	2) ---------- ○ (----------) ---------- ▶ 임상실시기관 우선 배정 가능 조건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참여 의향을 확인한 경우, 병상 상황 파악 후 임상실시기관 우선 배정 가능 참고자료 [부록 6]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 〉 임상시험 참여 의향	〈중수본 환자병상지원팀〉 임상실시기관 우선 배정 가능 조건 안내
31	나. 입원환자 중 전원/전실이 필요한 경우 (이하 생략)	[입원환자 중 전원/전실이 필요한 경우] ▶ 의료기관 ○ (전원/전실요청)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진료과정 중 전원 또는 전실이 필요한 경우 환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보고 후 병상 배정 받은 의료기관으로 전원 조치 또는 동일 의료기관 내 전실이 필요한 경우 (음압병상 ↔ 1인 병상 등)의 경우 담당의사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행 ○ (증상 호전 시)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동일병원 내 전실 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상급병원에서 공공병원, 민간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감염병전담병원, 지역거점의료기관, 국립병원, 경찰병원, 보훈병원, 군병원, 지방의료원, 그 외의 일반병원 등 ○ (증상 악화 시) 진료과정에서 증상이 악화되어 동일병원 내 전실 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상급병원 전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전원 의료기관에 제공 ▶ 보건소 ○ (병상배정요청) 의료기관의 전원 요청을 받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가용 병상 배정을 요청하며 그 결과를 의료기관에 통보 ○ (환자이송) 병상 배정을 통보받은 보건소는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송 ▶ 환자에게 입원 안내(치료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및 입원치료 통지 ▶ 전원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입원통지서 재발급(장소변경 명시) ▶ "X. 자원관리 → 2. 병상 배정 및 운영 원칙 / 3. 이송" 참고 ▶ 시·도 환자관리반 ○ (중등도 분류) 중증도 분류팀에서 중증도 점수 및 고위험군 여부에 따른 중증도 확인 ○ (병상배정통보) 병상배정팀은 중증도 분류에 맞는 관할 지역 내 적정 병상 상황을 파악하여 병상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 시·도내 중환자용 병상 부족 시 전원지원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에서 지원중)로 전원 요청 후 병상 배정, 시·도내 전담병원 및 일반병원 등 병상 부족 시는 (1차)개별 시·도간 협의 → (2차)권역별 병상 공동대응 협의체 협의 ▶ 7일 후 퇴소하여 자가격리 3일 시행 관련 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1. 확진환자 관리 → 마.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대상자로 관리하는 경우" 적용	〈환자관리지침팀〉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하위 항목으로 이동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32	다. 병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1)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이하 생략)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 **의료기관** ○ **(시설입소 요청)**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는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후 시설 입소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의료기관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여 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 환자의 기본정보 작성 후 보건소 인계 관련서식 [서식 19] 환자 상태 기록지 ▶ **보건소** ○ **(시설배정요청)**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여 시·도 환자관리반에게 관할 지역 내 생활치료센터 배정 요청 ○ **(환자이송)** 시설 배정을 통보 받은 보건소는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의 기본정보 확인, 구급차(보건소, 119)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격리안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배정된 시설을 안내하고 격리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과 코로나19 검사 절차 안내 및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 ▶ 입원 환자의 시설 입소 시 관할 보건소에서는 입원통지서 재발급(장소변경 명시)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 [서식 7] 코로나19 사례관리보고서(확진환자) ○ **(정보입력)** 퇴원 후 시설 입소 등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 **[퇴원 후 시설 입소보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환자관리** → **환자정보관리'**를 통해 보고 ▶ **시·도 환자관리반** ○ **(중등도 분류)** 중증도 분류팀에서 중증도 점수 및 고위험군 여부에 따른 중증도 분류 ○ **(시설배정통보)**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병상배정팀은 생활치료센터를 파악하여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 도내 생활치료센터 입소실 부족 시 시·도 환자관리반은 관내 또는 타 시·도 생활치료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입소실 협의 → 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 한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시설 조정 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조정결과를 시·도 환자관리반에 통보 ▶ 생활치료센터 전원 환자의 배정 결과는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 질병관리청에서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의 확진환자 정보를 2시간마다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시스템에 연계 ▶ **생활치료센터(시설)** ▶ **상세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1. 확진환자 관리 → 라.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 생활치료센터 입소" 참조**	〈환자관리지침팀〉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하위 항목으로 수정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추가 목차 변경에 따른 수정
32	(신설)	▶ 7일 후 퇴소하여 자가격리 3일 시행 관련 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1. 확진환자 관리 → 마.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대상자로 관리하는 경우**" 적용	〈환자관리지침팀〉 생활치료센터에서 7일 치료 후 퇴소하여 3일 자가격리 관리 안내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목차 변경에 따른 수정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32	(신설)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33	라. 병원·시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자가치료) ▶ 상세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참조 참고자료 상세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자가치료 안내서」 참조	다.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한 경우 ▶ ---------- 재택치료 --------- (삭제)	〈환자관리지침팀/생활치료센터관리팀〉 목차 구조 변경/명칭 변경 지침 명칭 변경
33	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생활치료센터 입소) ▶ 시설입소 대상자 -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신설) -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 ▶ 시설(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 조건 (이하 생략)	라.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 생활치료센터 입소 ▶ ---------- - ---------- ▶ 상세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1. 확진환자 관리 → 가. 환자 초기 분류" 참조 - 확진환자 중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삭제)	〈환자관리지침팀〉 병원치료 중 생활치료센터 입소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적합한 위치로 이동 및 하위 항목으로 수정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추가 목차 변경에 따른 수정 〈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중수본-30606, '21.9.25.) 비상의료대응 긴급 방역회의 결과 알림 관련 사항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33	(신설)	▶ (원칙)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발생 후 7일까지는 생활치료센터 입소하고, 이후 3일은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 ▶ 상세사항은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1. 확진환자 관리 → 라. 입원요인이 없고 재택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 생활치료센터 입소 → 3) 생활치료센터(시설)" 항목 참고 - 증상발생 7일 후 퇴소하는 경우, 일시적인 격리해제시간은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동수단은 일반 퇴소와 같은 방식으로 함. 지정된 격리장소에서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격리 실시(자가격리앱 설치) 후 PCR 검사없이 격리해제	
33	1) 입원환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퇴원기준에 합당한 경우 (이하 생략)	(삭제)	〈환자관리지침팀〉 본문 28p 이동
33	2) 확진환자 중 중증도 분류에 따라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분류한 자 ▶ 관할 지역 내 가용할 병상이 부족 시 적용	(삭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목차 변경
33	가) 보건소 ○ **(격리통보)**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격리통지서 사본을 문자 등으로 통보하거나 유선으로 안내하되 빠른 시일 내에 격리통지서 전달 ▶ 확진환자로 인지된 즉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거주지로 이동 후 확진된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중증도 확인)** 확진환자의 의식수준, 체온 및 고위험군 등 지표를 바탕으로 중증도 확인 ▶ 최초 인지보건소가 중증도 확인 ▶ 자택에서 대기 중 확진이 확인된 경우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중증도 확인 참고자료 [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 참고 ○ **(시설배정요청)**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중증도 분류와 가용 시설배정 요청 ○ **(환자이송)** 시·도 환자관리반 병상배정팀에서 생활치료센터를 통보 받은 실거주지 보건소는 환자의 기본정보 작성,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관련서식 [서식 19] 환자 상태 기록지 ○ **(격리안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배정된 시설을 안내하고 격리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과 코로나19 검사 절차 안내 및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 [서식 7] 코로나19 사례관리보고서(확진환자)	1) ----- ○ **(중증도 확인)** 확진환자의 의식수준, 체온 및 고위험군 등 지표를 바탕으로 중증도 확인 ▶ 최초 인지보건소가 중증도 확인 ▶ 자택에서 대기 중 확진이 확인된 경우는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중증도 확인 ○ **(시설배정요청)** 보건소는 시·도 환자관리반으로 연락하여 중증도 분류와 가용 시설배정 요청 관련서식 [부록 6]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 > 입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 ○ **(격리안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배정된 시설을 안내하고 격리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과 시설 내 검사 등 관련 사항 안내 ○ **(격리통보)**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격리통지서 사본을 문자 등으로 통보하거나 유선으로 안내하되 빠른 시일 내에 입원·격리 통지서 발급 ▶ **격리 통지서 발급** ○ **격리통보 주체** - (확진환자로 인지된 즉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초 인지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거주지로 이동 후 확진된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 ○ **장소/기간** - 최초 증상발생일 또는 확진일(무증상의 경우)을 기준으로 치료가 필요한 7일은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으로,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 기간으로 표시 ○ 변경통보 -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판단 등에 따라 의학적 치료 필요성 결정 시점 등이 달라지는 경우는 자가격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①격리기간이 변경되거나 ②병원전원으로 격리장소 및 격리기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 사항을 통보해야하며 그 절차는 최초 격리통지서 통보와 같음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보건소 업무 순서 변경 및 상세 설명 추가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34	(신설)	▶ 근거 :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관련서식 [서식 3] 입원·격리 통지서 / [서식 7] 코로나19 사례관리보고서(확진환자) ○ **(환자이송)** 시·도 환자관리반 병상배정팀에서 생활치료센터를 통보 받은 실거주지 보건소는 환자의 기본정보 작성, 구급차 등 이송수단을 활용하여 해당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중증도 변경)** 이송 중 혹은 센터 도착 시점이라도 환자의 중증도 변경이 있을 경우 시·도 환자관리반과 상의하여 필요 시 병원으로 배정하고 이송을 변경해야 함. 만약 센터 도착시점이라면, 센터 협력병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센터 운영진 및 협력병원도 적극 전원에 협력 ○ **(격리해제 확인서)** 퇴소(격리해제)자가 퇴소일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관련서식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보건소 업무 순서 변경 및 상세 설명 추가
34	나) 시·도 환자관리반 ○ (시설배정통보) 무증상 환자(고위험군 제외) 등으로 분류되면 병상배정팀은 생활치료센터를 파악하여 배정하고 그 결과를 보건소로 통보 (신설) ▶ 시·도 생활치료센터 입소실 부족 시 시·도 환자관리반은 타 시·도 생활치료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입소실 협의 →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시설 조정 요청 →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조정 후, 시·도 환자관리반에 결과통보 (신설)	2) ---------- ○ (---------) 무증상·경증 환자로 분류되고 입원요인(고위험군)이 없으며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 그 결과를 환자 관할 보건소 및 배정 생활치료센터로 통보 ▶ 임상실시기관 우선 배정 가능 조건 -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참여 의향을 확인한 경우, 병상 상황 파악 후 임상실시기관 우선 배정 가능 참고자료 [부록 6]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 〉 임상시험 참여 의향 ▶ ---------- ▶ 확진환자의 배정결과는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시도환자관리반 업무 상세 설명 추가 〈중수본 환자병상지원팀〉 임상실시기관 우선 배정 가능 조건 안내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34	(신설)	○ (오배치) 역학조사서 작성 및 환자 배정 과정이 유선 등으로 이루어져, 이송 전, 이송 중 혹은 이송 후 환자 오배치가 사후에 발견되고 관할 보건소의 환자 재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적합한 장소(병원/재택)로 정정 배치 ▶ 특히, 정신질환자, 중환자, 재택치료 가능 본인부담 발생 외국인의 시설배치 등은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입소 전 혹은 입소 중이라도 적합한 장소(병원/재택)로 정정 배치 ○ (변경배치) 환자가 시설 배치되었으나 환자 상태 변경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변경배치를 요청할 경우, 환자의 변경 중증도를 판단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병원 병상 배치	
34	(신설)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35	다) 시설(생활치료센터) ○ 환자 입소 전 지자체를 통해 환자의 기본정보 사전 파악 관련서식 [서식 19] 환자 상태 기록지 / [서식 8] 환자 건강 모니터링 ○ 건강관리책임자(담당의료진)는 일별 증상 모니터링하여 기록 ○ 전원, 사망, 격리해제 등 주요 상황 발생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유선 보고 ○ 격리기간 중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시설 건강관리책임자(담당의료진)가 연계된 의료기관에 환자 이송하고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만약 연계된 의료기관 병상 부족 시 실거주지 관할보건소에 통보하여 해당 시·도를 통해 병상 배정 요청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가 관리주체이나 시·도간 이동인 경우 협의하여 조정 ○ 퇴소(격리해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 ○ 퇴소(격리해제)자가 퇴소일 이후 요청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 관련서식 [서식 20] 격리해제 확인서	3) 생활치료센터(시설) ▶ 생활치료센터 운영은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관련 공무원이 운영하거나,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 중앙부처 공무원(관계부처 합동)이 운영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 운영하거나 계약직 채용으로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관계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계약 사항에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함 ○ **(환자 기본정보)** 환자 입소 전 환자관리정보시스템(그 외 추가질문지, 역학조사서 등) 및 시·도 환자관리반을 통해 환자의 기본정보 사전 파악 ▶ (기본정보) 입소 전 환자의 기본정보를 진료지원시스템에 입력하고, 배치된 환자의 기본정보를 환자관리시스템에서 불러와 입소일을 입력할 것 - 환자관리 명부가 필요할 경우, 환자 배치반에서 송부한 엑셀 명부, 진료지원시스템 입력자료 혹은 환자관리시스템 확진자 배치정보에 입소일 추가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엑셀 내보내기) ▶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의 70%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개발한 비대면진료지원 시스템을 사용 중이고, 이외는 협력의료기관 사용 시스템 활용 - 향후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의 확진환자 배치정보를 진료지원시스템에 연계하는 등 시스템 사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 ○ **(건강정보기록)** 건강관리책임자(담당 의료진)는 일별로 환자가 유선 혹은 비대면 앱으로 보고한 건강정보 및 X-ray 촬영 판독결과 등을 기록하고 건강상태 판단 ▶ (환자상태) 환자의 기본 건강상태는 환자 상태 기록지 또는 진료지원시스템의 문진에 기록 ▶ (건강모니터링) 환자의 매일의 건강 모니터링은 환자 건강 모니터링이나 비대면 진료지원시스템의 건강정보기록에 기록 관련서식 [서식 19] 환자 상태 기록지 / [서식 8] 환자 건강 모니터링 / 비대면 진료지원시스템 ○ **(중요상황 보고)** 환자 이탈, 사망 등 주요 상황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치료센터 관리팀에 유선보고 ○ **(환자 기본유형: 7일 후 퇴소 및 자가격리)** 최초 증상발생일 또는 확진일(무증상의 경우)을 기준으로 치료가 필요한 7일간이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으로, - 환자의 증상발생일 기준(무증상의 경우 확진일) 입소시작일에 따라 환자별로 입소일이 같아도 생활치료센터 입소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시설) 업무 상세 설명 추가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36</td><td>(신설)</td><td>
[퇴소 및 자가격리 대상 분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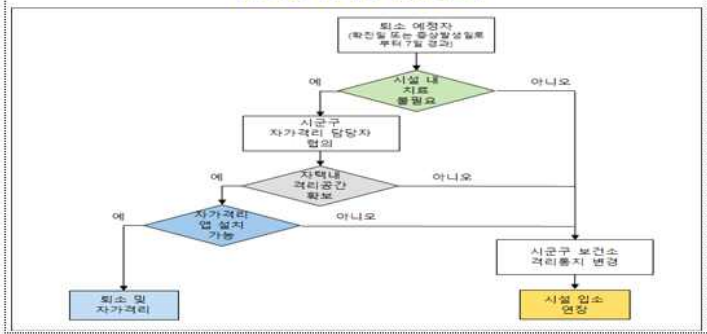

▶ (7+3) 임상 경과기반(무증상 확진환자 : 확진일로부터 10일 / 유증상 확진환자 : 증상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에서 10일의 격리기간을 시설·자가격리로 나눠서 시행
- (예) 무증상 확진일(10.1) 이후 3일째(10.3) 입소했다면 입소 6일째(10.8) 오전 퇴소 후 자택으로 이동해 3일간 자가격리하고, 확진 후 11일째 날(10.11) 정오 12시에 격리해제
<table>
<tr><th>10.1</th><th>10.2</th><th>10.3</th><th>10.4</th><th>10.5</th><th>10.6</th><th>10.7</th><th>10.8</th><th>10.9</th><th>10.10</th><th>10.11</th></tr>
<tr><td>확진 또는 증상* 발생</td><td></td><td></td><td></td><td></td><td></td><td></td><td>시설퇴소 가능일**</td><td></td><td></td><td>격리해제 가능일*** (정오 12시)</td></tr>
<tr><td colspan="11">⇐ 전체 격리 기간 ⇒</td></tr>
<tr><td colspan="7">⇐ 시설격리 기간 (+7일)⇒</td><td colspan="4">⇐ 자가격리 기간 (+3일)⇒</td></tr>
</table>
* 무증상 확진자가 이후 증상 발생하는 경우, 증상 발생일이 기준일이 됨
**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 없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경우 한정
*** 임상경과 기반 기준 적용 시 (기간) 기준과 (증상)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만 격리 해제
- (대상자 확정) 퇴소 및 자가격리를 위해서는 재택치료 건강요건, 격리공간요건, 모니터링 요건 충족 필요
❶ 건강관리책임자(의료진)가 더 이상 시설 내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❷ 자택 등에 독립적 공간 확보가 가능하여 자가격리에 적합하며(추가 설문지의 재택치료 가능 요건 참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등은 10일 격리 후 퇴소)
▶ 환자의 거주지와 자가격리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 환자 관할 보건소에 해당 사항을 반드시 통보해야 함
❸ 자가격리 앱을 시설 입소 시 휴대한(휴대폰의 명의자는 관계없고, 휴대여부가 중요) 휴대폰에 설치하여 자가격리 기간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경우 7일 이후 퇴소자로 확정
▶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추가적으로 머물러야 하므로 관할 보건소와 논의하여 격리통지 변경 필요
</td><td>〈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시설) 업무 상세 설명 추가</td></tr>
</table>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37	(신설)	- **(자가격리 부서 연계)** 생활치료센터는 시군구 자가격리 전담부서에게 퇴소 및 자가격리 예상명단을 송부하고, 전담부서에서 자가격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등 이견이 없으면 확정 ❶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부서에 늦어도 퇴소 전일 오전 11시까지 대상자 확정 요건을 검토한 '퇴소 후 자가격리 예정자 명단' 송부 ❷ 퇴소 전일 자정까지 전담부서의 이견이 없을 경우 명단 확정 관련서식 [부록 30] 퇴소 후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 양식(엑셀 서식) ▶ 일반적으로 **시도 운영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같은 시도 거주자를 담당하므로 시도 운영 생활치료센터에서 관할 시군구 내 실거주지로 퇴소하여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자가격리팀에서 안내한 지자체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부서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 외에도 **시도 단위에서 추가적인 연락 방법을 보완할 수 있음** - (예시) 대전시 운영 생활치료센터에는 대부분 대전시민이 입소하고 있으며, 대전시 운영 생활치료센터를 퇴소하는 경우 주로 관할 자치구(중구, 서구, 유성구 등)의 모니터링 전담부서에 연계되므로 대전시 내부적으로 별도의 소통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타 시도 환자가 퇴소 이후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생활치료센터 담당자는 격리통지서 상 실주소지 관할 시군구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부서로 퇴소 환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명단 송부에 유의**할 것 - (예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생활치료센터에서 경기도 용인시민과 서울시 노원구민이 퇴소하는 경우, 경기도 용인시 모니터링 전담부서와 서울시 노원구 모니터링 전담부서에 각각 연계 → 이 경우, 센터의 **복지부 담당자는 관할 실주소지에 환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하고, → 경기도 용인시와 서울시 노원구 자가격리 전담부서는 용인시민과 노원구민이 관할 생활치료센터 부족 또는 의료진 부족 등의 사유로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퇴소하는 것이므로 적극적 협조 필요 - **(시스템)** 증상발생 후 7일 시설 격리 후(무증상의 경우 확진일 기준) 퇴소 시 환자관리정보시스템에는 자가격리 전원으로 입력하고, 진료지원시스템에는 환자상태를 퇴소로 입력 - **(필수 퇴소준비)** 퇴소안내문, 시설 지급 위생용품(잔여 소독용품 등), 자가격리 앱, 이동수단 세 가지 참고자료 [부록 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추가 자가격리 대상자용) ❶ (퇴소안내문 등) 퇴소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퇴소안내문,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등을 출력하여 안내 ❷ (위생용품) 자가격리 전환기간 중 사용할 수 있도록 잔여 위생용품(소독용품, 마스크 등) 지참하여 퇴소하도록 안내 ❸ (자가격리앱 설치) 퇴소전일까지 자가격리앱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SNS나 문자 등을 통해 설치된 화면을 송부하게 하는 등 설치여부를 철저하게 확인 ❹ (퇴소 이동수단) 생활치료센터 주차장에서 퇴소 환자의 이동수단 준수여부 확인 : 자가격리 장소까지의 이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자차(가족차량 포함)▸ 및 방역택시, 지자체 제공 차량을 이용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시설) 업무 상세 설명 추가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38	(신설)	▶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및 운전자 장갑 착용, 퇴소자 뒷좌석 착석, 신체접촉 및 차내 음식섭취 금지, 주기적 환기, 하차 후 차내 · 외 표면소독, 격리장소 외 경유 또는 하차금지, 운전자만 동승하고 그 외는 탑승자제 ▶ 자차, 방역택시 등 확보가 불가한 경우, 일반 택시 탑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나,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제한함 - 퇴소자 일반택시 이용 시 생활치료센터는 택시 운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운전자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 후 탑승조치 **- (퇴소 필수교육) 격리 기간을 연장·변경하거나 격리 장소를 변경(병원, 자택 등)하는 경우** 참고자료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참고자료 [부록 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환자 예외유형) 격리 기간을 연장·변경하거나 격리 장소를 변경(병원, 자택 등)하는 경우** **- (재택치료 전환 요청 시) 시설 내 치료 필요성이 없는 환자가 퇴소 및 재택치료를 요청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상황 전달** ▶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의료진이 계속적으로 시설 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가 재택치료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 **[생활치료센터 퇴소 및 재택치료 전환 요청 시 대응방법]** ▶ 자택 내 격리공간 부재 등으로 인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으나, 여건이 변경되어 재택치료가 가능해지고(가구원 추가 확진 등) 환자가 재택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택치료 전환 가능 ○ 시·도, 시·군·구에서는 시설 내 치료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택치료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격리 통지 변경, 환자 이송 등에 적극 협조 필요 ▶ 시·도, 시·군·구에서는 재택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할 경우 단순 변심으로는 생활치료센터 퇴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사유 : 구급차 이송 등 의료자원 소요) **- (증상 악화 시) 관할 보건소에 환자가 증상발생일 기준(무증상은 확진일 기준) 7일 초과 격리 또는 병원 전원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입원·격리 명령 변경 요청**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시설) 업무 상세 설명 추가
39	(신설)	**[증상 악화 시 격리 기간 연장 또는 병원 전원 대응방법]** ▶ **격리명령의 변경은 지자체 소관**이며 일반적으로 지자체 보건소 분장업무이므로, 시설에서 보건소에 전원 발생 사실을 전달한 경우 지자체 내부에서 해당 지자체의 격리명령 담당자에게 변경 필요사항 전달 ▶ **증상발생일(무증상은 확진일) 기준 7일 초과 격리 시설 입소 환자** - (격리기간 연장) 격리기간 중 증상 발생 및 건강의 경미한 악화 등 ▶ 자가격리 2일 이하로 실시할 경우, 증상발생일 기준 7일 이후 퇴소자에 준해 퇴소절차 진행 ▶ **병원 전원이 필요한 시설 입소 환자** ○ **(전원 요건)** 입원을 요하는 환자 - 체온이 37.8도 이상이거나 호흡곤란이 있는 등 vital sign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전원 요청)** 격리기간 중 증상 발생 및 악화 시 시설 건강관리책임자(담당의료진)가 연계된 협력 의료기관에 환자를 이송하고, 연계된 협력 의료기관의 병상 부족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해당 시·도를 통해 병상 배정 요청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가 관리주체이나 시·도간 이동인 경우 협의하여 조정 ○ **(시스템)**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병원 전원으로 입력하고, 진료지원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환자 상태를 지정병원 이송으로 입력 ○ **(이송 유의사항)** 관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구급차로 이송 조치 - 환자 이송 시 환자의 배치 관할 지자체가 시설 관할 지자체와 상이할 경우, 각 지자체, 시·도 환자관리반, 생활치료센터,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관련 기관의 협업 조정 하에 신속한 이송 필요 - 협력 의료기관 또는 전원 병원에 전달이 필요한 자료는 추가 감염방지를 위해 지퍼백 등에 담아 반드시 동행자가 지참하여 전달할 필요 - 이송 시 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유지 ▶ 7일 후 퇴소하여 자가격리 3일 시행 관련 사항은 "**V. 확진환자 대응방안 → 1. 확진환자 관리 → 마.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대상자로 관리하는 경우**" 적용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생활치료센터(시설) 업무 상세 설명 추가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39	(신설)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40	(신설)	마.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자가격리 대상자로 관리하는 경우 1) 관할 지자체 ○ (격리관리 대상 통보) 생활치료센터 퇴소예정자(자가격리대상자) 명단을 관할 시·군·구의 자가격리 통지 담당부서 및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부서에 통보 ○ (격리통지) 지자체는 확진자의 치료 및 격리 장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원·격리통지서 발급	〈격리관리팀〉 생활치료센터에서 7일 치료 후 퇴소하여 3일 자가격리 관리 안내
40	(신설)	▶ 최초 증상발생일 또는 확진일(무증상의 경우)을 기준으로 치료가 필요한 7일은 생활치료센터 입원기간으로, 나머지 3일은 자가격리 기간으로 표시 - 단,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판단 등에 따라 의학적 치료 필요성 결정 시점 등이 달라지는 경우는 자가격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이 경우 생활치료센터와 관할 지자체가 협의하여 격리 통지서 재발급 등 조치) ▶ 자가격리 통지 시 생활수칙 안내문 2종 교부 및 안내 ▶ 자가격리 전환 대상자에 대한 자가격리 통지 및 수령증 징구 등은 일반적인 자가격리 통지절차방법을 준용(문서, SNS, 문자 등) 참고자료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참고자료 [부록 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격리관리팀〉 생활치료센터에서 7일 치료 후 퇴소하여 3일 자가격리 관리 안내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40	(신설)	○ (자가격리 장소 이동수단) 자가격리 전환 대상자의 퇴소 후 자가격리 장소까지의 이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자차(가족차량 포함)▶ 및 방역택시, 지자체 제공 차량을 이용 ▶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및 운전자 장갑 착용, 퇴소자 뒷좌석 착석, 신체접촉 및 차내 음식섭취 금지, 주기적 환기, 하차 후 차내·외 표면소독, 격리장소 외 경유 또는 하차금지, 운전자만 동승하고 그 외는 탑승자제 ▶ 자차, 방역택시 등 확보가 불가한 경우, 일반 택시 탑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나, 이 경우 택시 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로 제한함 - 퇴소자 일반택시 이용 시 생활치료센터는 택시 운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운전자의 예방접종완료 여부를 확인 후 탑승조치 ▶ 이동 시 방역수칙 준수사항 안내	〈격리관리팀〉 생활치료센터에서 7일 치료 후 퇴소하여 3일 자가격리 관리 안내
40	(신설)	○ (격리키트 등) 생활치료센터는 자가격리 전환기간 중 사용할 위생용품(소독용 스프레이 등)을 퇴소자가 지참하여 퇴소토록 안내 ○ (모니터링) 자가격리앱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적정 격리여부 모니터링(1일 2회)	〈격리관리팀〉 생활치료센터에서 7일 치료 후 퇴소하여 3일 자가격리 관리 안내
40	(신설)	2) 자가격리 방법 ▶ 밀접접촉 및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및 관리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영유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 다. 자가격리 방법 → 공동 격리" 항목 참고	〈격리관리팀〉 생활치료센터에서 7일 치료 후 퇴소하여 3일 자가격리 관리 안내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41	(신설)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 다만, 검사나 진찰, 증상악화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도록 지도 ○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함 ▶ 다만, 난방, 가스, 수도 등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공적 목적 등의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 허용 ○ 자가격리 중 발생한 폐기물은 격리해제 3일 경과 후 소독·밀봉하여 일반폐기물로 배출	
41	(신설)	3) 격리 해제 ○ 최초 증상발생일 또는 확진일(무증상인 경우)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에 격리해제 ▶ (예시) 10월 1일 확진된 경우, 10월 11일 정오(12:00)에 격리 해제 ○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의 격리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 없이 격리해제 가능	〈격리관리팀〉 격리기간 조정
41	(신설)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44	[입원·전원·시설 입소 시 단계별 대응 주체] 입원치료 통지서	[----------] 입원격리 ----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서식 등 변경 사항 반영
44	(신설)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45	3. 역학조사 [역학조사 관련 용어] 근원환자 : 집단감염의 원인(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환자(증상발생일이 가장 빠른 환자)	3. ------ [----------] ------ : ---------- 확진자(증상발생일이 가장 빠른 환자)	〈역학조사팀〉 자구 수정 환자→확진자
49	3. 역학조사 마. 공항 및 항만 입국 검역대응 단계에서의 확진환자 역학조사·등록 (신설)	3. ------ 마. ---------- ○ (해외입국 격리면제 확진자 분류) 입국 후 최장잠복기 이내 국내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감염경로를 "미분류"가 아닌 "해외입국"으로 분류	〈역학조사팀〉 해외입국 격리면제자 확진자 분류 변경
50	3-1. 접촉자 조사 및 관리 다. 관리사항 2) 접촉자 관리 ○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역학조사반)의 감염위험도 판단에 따라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검사 시행을 결정할 수 있음 -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면서 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검사 권고가 원칙 ▶ 접촉자 중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참고	3-1. ---------- 다. ------- 2) -------- ○ ---------- ---------- - ---------- (삭제)	〈역학조사팀〉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통합하여 삭제
51	(신설)	3)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 정의 - "예방접종완료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 예방접종완료자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시) 예방접종완료일: 11.1일, 2주째: 11.15일, 지침 적용일: 11.16일 0시부터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52	(신설)	-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함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경우 향후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면,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협약 작성이나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 필요 참고자료 [부록 28]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 원칙 - 예방접종완료자도 확진자와 밀접접촉 시 접촉자와 동일하게 역학조사 및 그에 따른 PCR검사 등 조치 실시 - 수동감시를 위한 3가지 기본조건▸을 충족하는 예방접종완료자는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수동감시 실시 가능 ▶ **수동감시를 위한 3가지 기본조건**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 **3가지 기본조건 미충족 시 자가격리 시행** ▶ 조건을 충족하여 수동감시로 전환한 이후라도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확진자 전환 ▶ **수동감시 예외**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고위험집단시설 이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조치 가능 - 수동감시 실시 중에는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 ▶ 감시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참고자료 [부록 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부록 2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 ○ 검사 및 수동감시 해제 - 접촉자 분류 직후 및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실시▸	〈역학조사팀〉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사항 추가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53	(신설)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격리해제 전 검사 등) ▶ 고위험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의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 필수 - 수동감시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한 후 PCR검사 실시 ▶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신속하게 확진자로 전환하여 관련 조치 시행 - 위 관련 각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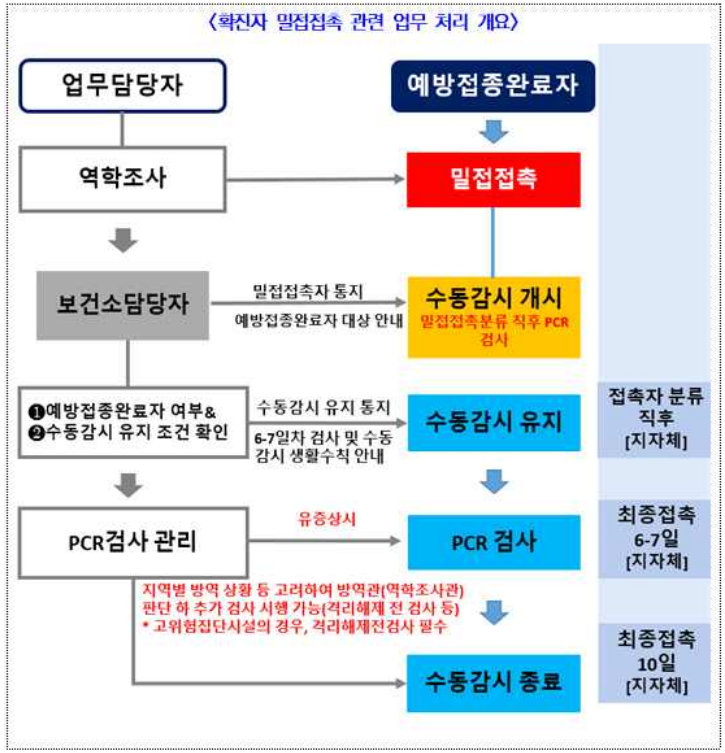 	〈역학조사팀〉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사항 추가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54	3) 의료기관 또는 집단시설 노출력 확인 및 조치	4) ----------	〈역학조사팀〉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사항 추가로 구조 변경/명칭 변경
57	3-2.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조사 나. 현장대응 3) 역학조사 ○ (시설·환경 관리) 환자 거주 및 활동(사업장, 직장, 학교, 병원 등) 장소 등 시설 관리 (신설)	3-2. ---------- 나. ----- 3) ----- ○ (----------) ---------- ▶ "IX. 환경관리(소독·환기) → 1.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참고 참고자료 [부록 3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역학조사팀〉 환기 지침 안내
58	3-2.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역학조사 나. 현장 대응 3) 역학조사 ○ (접촉자조사) 노출 장소, 시기별 접촉자 조사 및 분류 - 협력업체 및 인적 교류 현황 등 정보 수집을 통해 접촉자 조사 범위 설정 ▶ 확진환자 및 접촉자 조사 시 동선(이동경로 등) 확인 : 동선은 환자 면접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GPS❶, DUR❷, 카드사용내역❷, (전자)출입명부[KI-Pass]❸ 등의 조사는 시·도 방역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에만 시행 (생략) ❸ (전자)출입명부[KI-Pass] 조회는 지자체 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지원 시스템을 통해 요청 (신설)	3-2. ---------- 나. ------- 3) ------ ○ (-------) ---------- - ---------- ▶ ---------- : ---------- (전자)출입명부[KI-Pass]❸, 간편전화체크인❹, 수기명부❺ ---------- ❸ ---------- ❹ 간편전화체크인 조회는 해당 시설관리자 또는 해당업체 서버 접속 또는 해당업체 보안메일을 통한 정보요청 ❺ 수기명부는 해당시설 방문을 통해 정보수집 ▶ 수기명부에 기재된 개인안심번호는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조회	〈역학조사팀〉 접촉자조사 방법 추가 안내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59</td><td>(신설)</td><td>
〈유행 장기화에 따른 역학조사 효율화 방안〉
○ 개요
– (배경) 유행 장기화에 따라 위험도와 지자체 대응역량 고려하여 효율적인 역학조사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목적) 위험도 높은 집단을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접촉자 조사체계 조정
○ 세부내용
– (기본 원칙) 지자체 유행상황 및 대응역량에 따라 우선순위별* 대응 가능
* 대규모 유행 또는 대응역량에 따라 전파력이 높고 감염에 취약하며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1순위 우선 대응으로 추가 전파·확산 차단에 집중, 이하 순위는 순차적으로 대응
※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우선 대응 가능
※ 신속한 역학조사 및 위험도 평가를 위해 의료인, 보건관리자 등이 있는 기관(학교, 공공기관, 병원 등)은 「사전준비자료 및 상황대응자료*」를 준비 가능
* 사전준비자료: 전체 인원 현황(이름, 국적, 주민번호, 전화번호, 신분, 예방접종력, 검사 관련 사항 등), 기관 정보(기관명, 주소, 제출일, 현황, 방역 담당자, 특이사항 등), 기관 예방관리 현황, 기관 내부 사진, 건물 도면, 건물 배치도(층별, 호실별)
* 상황대응자료: 노출상황(발생개요, 최초 확진자 정보, 선행 확진자 정보, 노출기간, 노출 장소 등), 역학적 특성(일반적 특성, 신분별 특성, 예방접종력 특성 등), 조치사항(소독, 검사, 자가격리, 비대면 수업 등)
– (적용 시기) 광역지자체(시도)가 관할 기초지자체(시군구) 적용 시기 조정 가능
– (주요변경사항) 조사대상 우선순위 선정, 조사 기간 및 기한 제시
– (노출시설 조사방식) 출입명부 확보된 시설부터 조사, QR정보·안심콜·재난문자 적극 활용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현행</th><th>효율화 방안</th></tr>
<tr><td colspan="2">조사 범위</td><td>노출시설·접촉자 전체</td><td>– 지자체 유행상황 및 대응역량에 따라 우선순위별 대응 가능
<table>
<tr><td>1순위</td><td>가족·동료 감염취약시설* 및 학교, 학원, 의료기관</td></tr>
<tr><td>2순위</td><td>고위험시설**</td></tr>
<tr><td>3순위</td><td>그 외 다중이용시설</td></tr>
</table>
* 감염에 취약하여 집단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로서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군부대, 기숙사, 학교, 학원, 의료기관
** 감염 및 전파가능성이 높은 시설로서 유흥시설, 주점,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PC방, 목욕탕, 종교시설</td></tr>
<tr><td rowspan="2">조사 기간</td><td>접촉자</td><td>– (유증상) 증상발생 -2일부터 확진 시
– (무증상) 검체채취 -2일 부터 확진 시</td><td>– 유·무증상 적용
* 유증상자 확진일이 증상발생 후 5일이 경과한 경우 5일까지 조사</td></tr>
<tr><td>감염원</td><td>– 증상발생 기준 -14일부터</td><td>– 유행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 1순위: 증상발생일 -6일, 2순위 이하 : 증상발생일 -14일
* 유행상황 및 대응역량에 따라 우선순위별 대응 가능</td></tr>
<tr><td colspan="2">조사 기한</td><td>– (접촉자) 24시간 이내
– (감염원) 기한없음</td><td>– (접촉자) 1순위 24시간 이내 실시
– (감염원) 조사 가능 시 1순위 24시간 이내 실시
* 1순위는 조사 기한에 맞춰 진행하고, 다음 순위 노출시설 은 대응역량 고려하여 조사 진행하되, 최소한 이용자 대상 검사 안내는 필요</td></tr>
</table>
</td><td>〈역학조사팀〉
역학조사 효율화 방안 안내</td></tr>
<tr><td>60</td><td>다. 조치 사항
1) 위험도 평가 및 관리방법 결정
○ 시·도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이 현장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노출 상황, 시설·환경, 운영 인력 등에 대해 평가한 뒤 관리계획▶ 수립
(생략)
(신설)</td><td>다. -------
1) ----------
○ ----------

참고자료 위험도평가 시 위험요인 등 세부사항은 [서식 10] 코로나19 집단사례조사서 참고
관련서식 [서식 10] 코로나19 집단사례조사서</td><td>〈역학조사팀〉
역학조사 시 위험도평가 시 위험요인 등 참고사항 안내</td></tr>
</table>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63</td><td>4) 추가환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바) 집단시설 내 의료종사자 및 퇴원(퇴소) 관리
○ 접촉자(환자 및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 포함)가 퇴원 또는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가 가능하고,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시 자차, 도보, 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하며, 확진자와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자가격리 실시</td><td>4) ----------
바) ----------
○ ----------
---------- 10일이 ----------
----------</td><td>〈역학조사팀〉
격리기간 조정</td></tr>
<tr><td>64</td><td>▶ 집단사례 규모별 조치 사항 (예시)
<table>
<tr><th>집단사례 규모</th><th>발생 규모</th><th>접촉자 관리</th><th>시설·환경 관리</th><th>비고</th></tr>
<tr><td rowspan="3">1개</td><td>10명 이하</td><td>▸접촉자 검사
▸자가격리조치</td><td>▸소독·환기
▸방역관리자 지정/교육실시</td><td></td></tr>
<tr><td>50명 이하</td><td>▸접촉자 및 시설 전수 검사
▸재난안전문자를 통한 검사
▸자가격리 등 이동 제한</td><td>▸소독·환기/환경검사
▸(필요시)시설 폐쇄
▸방역관리자 지정 및 교육실시</td><td></td></tr>
<tr><td>100명 이하</td><td>▸접촉자 및 시설 전수 검사
▸재난안전문자를 통한 검사
▸(필요시)관련시설 선제적 검사
▸코호트격리 등 이동 제한</td><td>▸소독·환기/환경검사
▸(필요시)시설 폐쇄
▸방역관리자 지정/교육실시</td><td></td></tr>
<tr><td rowspan="3">2개 이상</td><td>10명 이하</td><td>▸접촉자 검사
▸자가격리조치</td><td>▸소독·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및 교육실시</td><td rowspan="3">타지역 이관 및 지역간 상황 공유</td></tr>
<tr><td>50명 이하</td><td>▸접촉자 및 시설 전수 검사
▸재난안전문자를 통한 검사
▸자가격리 등 이동 제한</td><td>▸소독·환기/환경검사
▸(필요시)시설 폐쇄
▸방역관리자 지정/교육실시</td></tr>
<tr><td>100명 이하</td><td>▸접촉자 및 시설 전수 검사
▸재난안전문자를 통한 검사
▸(필요시)관련시설 선제적 검사
▸코호트격리 등 이동 제한</td><td>▸소독·환기/환경검사
▸(필요시)시설 폐쇄
▸방역관리자 지정/교육실시</td></tr>
</table></td><td>▶ 집단사례 규모별 조치 사항 (예시)
<table>
<tr><th>집단사례 규모</th><th>발생 규모</th><th>접촉자 관리</th><th>시설·환경 관리</th><th>비고</th></tr>
<tr><td rowspan="4">1개</td><td>10명 이하</td><td>▸접촉자 검사
▸자가격리조치</td><td>▸소독·환기
▸방역관리자 지정/교육실시</td><td></td></tr>
<tr><td>50명 이하</td><td>▸접촉자 및 시설 전수검사
▸재난안전문자를 통한 검사
▸자가격리 등 이동 제한</td><td>▸소독·환기/환경검사
▸(필요시)시설 폐쇄 또는 제한적 시설 이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교육실시</td><td></td></tr>
<tr><td>100명 이하</td><td>▸접촉자 및 시설 전수검사
▸재난안전문자를 통한 검사
▸(필요시)관련시설 주기적 선제검사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 등 이동 제한</td><td>▸소독·환기/환경검사
▸(필요시)시설 폐쇄 또는 제한적 시설 이용
▸방역관리자 지정/교육실시</td><td></td></tr>
<tr><td>101명 이상</td><td>▸접촉자 및 시설 전수검사
▸재난안전문자를 통한 검사
▸(필요시)관련시설 주기적 선제검사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 등 이동 제한</td><td>▸소독·환기/환경검사
▸(필요시)시설 폐쇄
▸방역관리자 지정/교육실시</td><td></td></tr>
<tr><td rowspan="4">2개 이상</td><td>10명 이하</td><td>▸접촉자 검사
▸자가격리조치</td><td>▸소독·환기
▸방역관리자 지정 및 교육실시</td><td rowspan="4">타지역 이관 및 지역간 상황 공유</td></tr>
<tr><td>50명 이하</td><td>▸접촉자 및 시설 전수검사
▸재난안전문자를 통한 검사
▸자가격리 등 이동 제한</td><td>▸소독·환기/환경검사
▸(필요시)시설 폐쇄 또는 제한적 시설 이용
▸방역관리자 지정/교육실시</td></tr>
<tr><td>100명 이하</td><td>▸접촉자 및 시설 전수검사
▸재난안전문자를 통한 검사
▸(필요시)관련시설 주기적 선제검사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 등 이동 제한</td><td>▸소독·환기/환경검사
▸(필요시)시설 폐쇄 또는 제한적 시설 이용
▸방역관리자 지정/교육실시</td></tr>
<tr><td>101명 이상</td><td>▸접촉자 및 시설 전수검사
▸재난안전문자를 통한 검사
▸(필요시)관련시설 주기적 선제검사
▸동일집단격리(코호트격리) 등 이동 제한</td><td>▸소독·환기/환경검사
▸(필요시)시설 폐쇄
▸방역관리자 지정/교육실시</td></tr>
</table>
참고자료 [부록 33] 도매·전통시장 방역관리 매뉴얼</td><td>〈역학조사팀〉
집단사례 규모별 조치 사항 중 자구 수정 및 101명 이상 대응 예시 추가 안내</td></tr>
<tr><td>65</td><td>마. 협력 업무
○ (기본방향) 시·도 즉각대응팀의 현장 상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분야별 지원팀▶을 구성하여 지원
▶ 방역팀, 의료지원팀, 생활지원팀, 현장통제팀</td><td>마. -------
○ (------) ----------

▶ ---------- 현장통제팀 등</td><td>〈역학조사팀〉
자구 수정</td></tr>
</table>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66	바. 자료관리 1) 기본원칙 ○ (연계관리) 자료관리 담당은 상황 종료 시까지 시·군·구 및 시·도 담당자와 연락체계 유지하면서 후속 관리	바. ------ 1) ------ ○ (------) ---------- 담당자 및 질병관리청(권역센터)과 ---------	〈역학조사팀〉 자료관리와 관련하여 연락체계 유지 기관 추가
67	3-3. 자가격리자 운영방안 나. 자가격리 절차 ○ 관할 보건소장은 자가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심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 ▶ 격리통지서를 발급 및 전달, 격리통지서 수령증에 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 보건교육 실시, 자가격리 키트를 대상자에게 보급 등 ▶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문자, SN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 후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등은 자가격리 키트와 함께 우편, 택배, 인편 등으로 발송 가능 - 문자 메시지에 필수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 격리대상자, 격리기간, 격리장소, 통지기관, 담당자 연락처 등 ▶ 필수기재사항은 격리통지서 원본 사진파일 첨부 등으로 대체 가능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안내 및 자가격리앱 설치안내 등을 추가 문자 또는 유선으로 안내 - 통지서 본인 수신여부는 문자 회신 또는 자가격리 키트와 함께 발송한 수령증 서명 사진 문자 회신 등으로 갈음 가능 - 자가격리앱 기록 확인 등을 통해 격리대상자의 적정 격리여부 모니터링(수시)	3-3. ---------- 나. ---------- ○ ----------통지▶하고, ---------- ▶ ---------- ▶ ---------- 인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등으로 전달 --- - ---------- ▶ ------ 격리기간, 해제 전 검사 의무, ---------- ▶ ---------- -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안내 ---------- - ----------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기록 ----------	〈격리관리팀〉 격리통지서 발급 가능 앱 안내 문자메시지 필수사항 추가 격리기간 조정
68	○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또는 해외에서 입국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 통지서에서 명시한 기간으로 함	○ ----------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2:00)까지를 ----------	〈격리관리팀〉 격리기간 조정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68	다. 자가격리 방법 ○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함. 다만,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도록 지도 (신설)	다. ---------- ○ ---------- - 자가격리 중 의심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와 연락·상담을 통해 필요시 보건소 담당자와 검체 채취방법에 대해 협의	〈역학조사팀〉 자가격리 중 조치사항 구체화
68	다. 자가격리 방법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함. 다만, 시급성을 요하는 사유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방문서비스를 허용함▶ ▶ 사유 : 난방, 가스, 수도 등 자가격리에 필수적인 사안에 대한 수리 서비스로서 방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로 한정 ▶ 절차 : 자가격리자가 지자체에 방문서비스 허용 요청 → 지자체 허용여부 결정 → 허용 시 지자체가 자가격리자와 방문서비스 담당 직원에게 동시에 방역수칙* 준수 안내 * 비대면 거리두기(방문서비스 중 별도공간 대기, 계좌이체 등 비대면 결제 등), 마스크 착용(KF-94 동급), 집안 환기·소독 등	다. ---------- ○ 원칙적으로 자가격리 ---------- 금지함 - 다만, 난방, 가스, 수도 등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또는 일정 변경이 어려운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외부인 방문 허용▶ (삭제) ▶ --- : ---------- 외부인의 자택 방문 승인 --------- 승인 여부 ------- 승인 시 ---------- 방문자에게 ---------- 방역수칙▶ -------- ▶ 적정 거리두기(방문 중 별도공간 대기 대기 등), ------- (KF94 이상), ----------	〈격리관리팀〉 자가격리 시 외부인 방문 허용 관련 문구 수정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69	▶ 자가격리 중 시험응시(일자리), 임종, 장례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향 - 반드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도록 격리대상자에게 안내 - 담당자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차량(구급차 권장)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와 함께 이동 (신설)	▶ -------- 시험응시(일자리), 투표, ---------- - 격리자는 사전에 전담공무원과 이동 수단 및 동선 등을 협의하고 외출시 자가격리앱 활성화 및 전담공무원과 연락 유지 - 전담자는 자가격리앱 및 GIS 상황판을 활용, 격리자의 이동 동선 모니터링 ▶ 격리수칙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격리관리팀〉 시급성 요구 상황의 대응 방향 수정
69	라. 자가격리 해제 ○ (안내)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확진환자 최종접촉일/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에 격리 해제됨을 안내 ▶ (예시) 최종접촉일/입국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4.15일 정오(12:00) 격리해제 ▶ 단, 시설에서 격리한 경우 시설의 상황에 따라 격리해제 시각 변동 가능	라. 자가격리해제 ○ (---) ---------- 10일이 경과한 ---------- 격리해제됨을 안내 ▶ (---) ----------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4.11일 ---------- ▶ ----------	〈격리관리팀〉 격리기간 조정 자구 수정
69	○ (격리해제 전 검사)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아래의 대상자는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12~13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하고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에 격리해제 ▶ 지자체 판단에 따라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해 최종접촉일로부터 7~8일째 추가로 검사 가능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도 격리해제 적용	○ (----------) ---------- 모든 자가격리자는 최종접촉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9~10일차 되는 날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 (삭제) ▶ ----------	〈격리관리팀〉 격리기간 조정에 따른 격리해제 전 검사일 수정 7~8일차 검사 삭제
69	○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에 대한 판정이 연속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지자체에서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 해제 여부 결정	○ ---------- 격리해제 여부 ---	〈격리관리팀〉 자구 수정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69	(신설)	○ (격리해제) 9~10일차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2:00)에 격리해제 ▶ 음성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는 10일이 경과되더라도 격리해제할 수 없음 ▶ 9~10일차 검사를 늦게 받은 경우는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시점에 격리해제 ▶ (예시) 10일차 18시 검사하여 11일차 16시에 음성 확인 → 11일차 16시에 격리해제 ▶ 검사 미실시자 또는 거부자는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2:00)에 격리해제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도 격리해제 적용	〈격리관리팀〉 명확한 격리해제 사항 안내정
71	마. 기타 사항 4) 예방접종 예약 변경 ○ 자가격리 기간 중 예방접종 예약이 된 경우 격리통지서를 근거로 관련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 접종일 변경 요청 ▶ 자가격리기간 중 예방접종을 위한 외출은 원칙적으로 불가 - (생략) ▶ 반드시 자차 또는 방역택시 이용 및 방역수칙(KF94 동급 이상 마스크 상시 착용, 접종 및 귀가 시 타인 접촉 금지, 접종 후 즉시 귀가 등) 준수	마. ------- 4) ---------- ○ ---------- ▶ ---------- ▶ ---- 도보, 자차 또는 방역택시 등 이용(대중교통 이용 금지) ----------	〈격리관리팀/환자관리지침팀〉 이동 수단 중 도보 추가 및 대중교통 이용금지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73	3-4. 지역사회 유행 시 감시강화 다. 지역사회 선제검사 	3-4. ---------- 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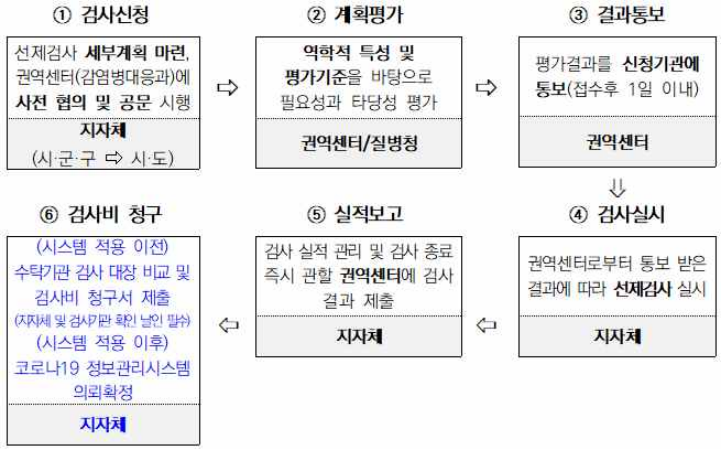 	〈진단검사운영팀〉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청구 방식 수정
73	○ (검사비청구) 당월 검사 건에 대하여 지자체 검사 의뢰 관리대장과 수탁검사기관 검사 결과대장을 비교 완료 후, '진단검사비 청구서'에 확인 날인	○ (--------) (시스템 적용 이후)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내 의뢰 확정처리 시 검사비 지급 ▶ (시스템 적용 이전) 기존 청구방식 유지	〈진단검사운영팀〉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청구 방식 수정
74	3-5. 역학조사 정보관리 가. 기본원칙 ○ (관리주체) 접촉자 관리 종료 시(마지막 환자와 접촉 후 14일)까지 최초 인지 관할 보건소에서 작성·등록·수정을 하며 시·도에서 자료 확인·검증 지속	3-5. ---------- 가. --------- ○ (------)------- 종료 시(마지막 환자와 접촉 후 10일)까지 ----------	〈역학조사팀〉 접촉자 관리 기간 축소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77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나. 조사 및 관리체계 ○ (접촉자 관리) 지자체에서 아래 사례분류 기준에 따라 접촉자 관리 조치 실시 ▶ 사례분류 기준에 따른 접촉자 관리조치 ① 단순 재검출 : 접촉자 격리조치 없음, 증상모니터링, 보건교육 실시 ② 재감염 추정사례 :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까지 격리(자가, 시설, 병원)	4. ---------- 나. ---------- ○ (---------) ---------- ------- ▶ ---------- ① ---------- ② ---------- 10일이 ---------- ----------	〈역학조사팀〉 접촉자 관리 기간 축소
78	라. 재검출/재감염 사례 대응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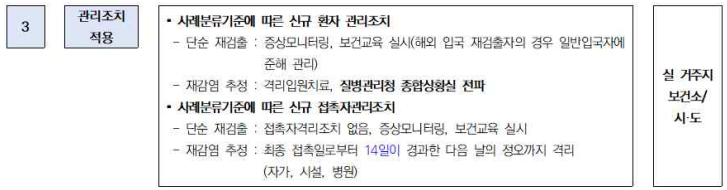 	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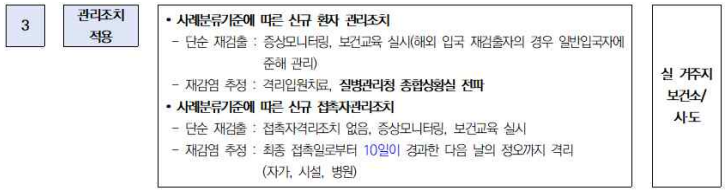 	〈역학조사팀〉 접촉자 관리 기간 축소
78	(신설)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79	5.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주요 변이바이러스 PCR 분석 (알파형, 베타형, 감마형) 시행	5. ---------- ▶ ---------- ---, 감마형, 델타형) ----	〈진단분석단〉 업무 현행화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Ⅵ.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85	2. 의사환자 대응 방안 [의사환자 대응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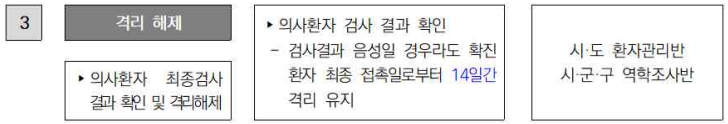 	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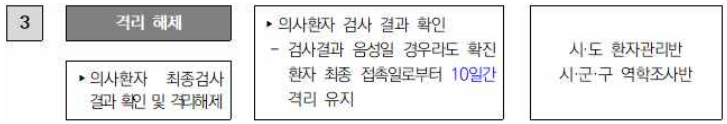 	〈역학조사팀〉 접촉자 관리 기간 축소
86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최초 방문 및 안내사항 설명, 격리통지서 및 생활수칙 안내문 교부, 14일간 격리 및 능동감시	○ (----------) ---------- ---------- 10일간 ----------	〈환자관리지침팀〉 접촉자 관리 기간 축소
86	나. 격리 해제 ○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를 유지하고, 이후에 격리 해제 ▶ 격리해제 예시 : 최종접촉일(4.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4.15일 정오(12시) 격리해제	나. 격리해제 ○ ---------- 10일이 ---------- ▶ ---------- : ----------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4.11일 ----------	〈환자관리지침팀〉 접촉자 관리 기간 축소
87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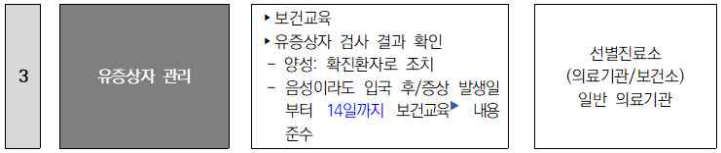 	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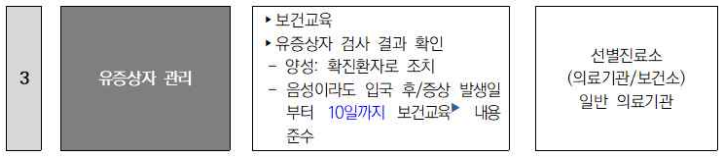 	〈환자관리지침팀〉 접촉자 관리 기간 축소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88	가. 선별진료소 이용절차 1) 접수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없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 시까지). 단,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사례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무증상자 등) 입구에서 접촉하지 않도록 동선 분리하여 검사토록 권고	가. ---------- 1) --- ▶ 일상회복 단계, ---------- ----------	〈진단검사운영팀〉 방역체계전환에 따른 문구 수정
89	4) 상황별 대응 절차 ○ (검사실적 입력) 보건소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비는 수탁기관에 의뢰하여 국비 지원 - 유증상자는 개별검사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선별진료소 항목에 입력 - 무증상자는 풀링검사로 구분을 위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임시선별검사소 항목에 입력	4) ---------- ○ (----------) ----------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내 선별진료소 또는 선별진료소(무증상자) 텝에 실적입력	〈진단검사운영팀〉 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청구방식 수정
Ⅶ. 사망자 관리			
93	5. 행정사항 (신설)	5. ------ ▶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관련 사항은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 1. 개요 → [확진환자번호를 부여받은 확진자에 대한 별도 정보관리]" 참고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
Ⅷ. 실험실 검사 관리			
95	1. 검체 채취 가. 채취장소 ○ 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과 격리된 검체 채취 공간	1. ------- 가. ------- ○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	〈진단분석단〉 채취기관 명확화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97	2. 검사 의뢰 나. 기관별 검사의뢰 ○ (보건소 선별진료소) 수탁검사기관으로 검사 의뢰 ▶ 수탁검사기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 가능 (신설) ○ (검역소) 검체채취 후 권역센터(진단분석과 실험실) 소관 실험실로 검사 의뢰 (신설)	2. ------- 나. ---------- ○ (----------) ---------- ▶ ---------- ▶ 최초 검사에서 미결정 결과가 나온 경우는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 의뢰 ○ (----) ---------- ▶ 상황별 검사기관 확인은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2. 관리방안 →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및 격리시설 등 구분" 참조	〈진단분석단〉 검사 미결정 결과 시 재검사하도록 안내 검역단계의 증상유무에 따라, 공항 또는 항만에 따라 검사기관이 달라, 원활한 업무를 위한 참조 추가 기술 필요
101	5. 검사 기관별 결과 보고 나.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결과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결과 입력·보고 ▶ 양성인 경우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789, 7790)과 최초 인지 보건소로 즉시 유선 통보	5. ---------- 나. ---------- ○ ---------- ▶ --------- 검사의뢰 보건소로 ----------	〈진단분석단〉 보건소와 보건환경연구원의 동일 확진자 대상 중복 신고 방지를 위하여 보환연 의무사항에서 제외 및 의미 명확화하기 위하여 수정
101	라. 주의 사항 ○ 재검 필요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지침」과 「COVID-19 검사 Q&A」 최신판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정 ▶ 해당 지침은 '대한진단검사의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설)	라. -------- ○ ---------- ▶ ---------- ▶ 최초 검사에서 미결정 결과가 나온 경우는 검체를 재채취하여 재검사	〈진단분석단〉 검사 미결정 결과 시 재검사하도록 안내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101	○ 검사결과에 따른 격리해제 조치결정이 어려운 경우(예: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검사하여 미결정이 연속 3회 이상 반복되는 상황 등)는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할 수 있음 ▶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 요청 방법 :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격리관리팀에 문서로써 협의 요청 ① 대상자 인적정보 ② 역학정보(접촉관계, 노출이력 등) ③ 임상정보(검사결과기록, 검사기관 등)	○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미결정에 대한 판정이 연속 2회 이상 반복될 경우, 지자체에서 검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격리해제 여부 결정 (삭제)	〈격리관리팀〉 격리해제 전 검사 미결정 시 대응 안내
Ⅸ. 환경관리(소독·환기)			
103	(신설)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실내 환기 지침 **가. 검토배경** ○ **(목적)** 에어로졸에 의한 바이러스의 공기전파 방지를 위한 실내 환기 지침 마련 ▶ 세계보건기구(WHO),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USCDC)에서는 에어로졸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SARS-CoV-2의 주요 전파경로로 인정 (Wang et al, Science 373, eabd9149 (2021)) ○ **(검토방향)** 기계 환기설비 유무/시설유형에 따른 환기 지침 제시 ○ **(기본원칙)**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설비를 활용하여 실내공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제거 ▶ 창문 및 출입문을 개방하고, 선풍기 및 기계환기 설비 등으로 환기량 극대화 ▶ 공기청정기 활용 시 유해 물질 제거에 부가적인 도움 **나. 기계환기 설비 설치 유무에 따른 실내 환기 지침** ○ **(기본사항)** 기계환기 설비 미설치 시설 포함 ▶ 하루에 최소 3회, 회당 10분 이상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 - 밀집도에 따라 창문/출입문 개방 등의 자연 환기를 추가로 시행 ▶ 자연 환기 시 시설 출입문 및 전·후면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환기 ▶ 냉·난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기 ① 풍향은 사람이 없는 방향(천장 또는 벽)으로 바람의 세기를 가능한 약하게 설정 ② 대중교통, 공용이용 승합차 운영 시 창문 지속적으로 열어두기 ▶ 냉·난방 중에 환기하지 않는 경우 비말이 재순환 되면서 감염 확산 위험 증가 ▶ 기계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써큘레이터/벽부형 환기팬 등을 이용하여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 ○ **(기계환기 설비 설치 시설)** ▶ 환기설비 외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 공기로 환기 - 외기 도입량과 배출량을 모두 100% 설정 (내부 순환모드 운전 지양) ▶ 고위험 시설에서는 고성능 필터(HEPA) 사용 권장, 주기적 교체 -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에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에 유의할 것 ▶ 위생 배관을 통한 기류 이동이 없도록 조치	〈역학조사팀〉 환기 지침 내용 정리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104	(신설)	○ **(기타사항)** ▶ 공기청정기 이용 시 취출구 방향이 재실자가 없는 곳으로 향하도록 설정 ▶ 화장실에서는 환기량 증대를 위해 환기팬 상시가동/ 환기팬 미 존재 시 이용 후 충분한 환기 시간 확보 ▶ 화장실은 출입문을 닫고, 화장실 환기팬은 역류방지댐퍼가 있는 제품 설치 권장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 설비 필터는 기기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및 기계환기 설비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 장갑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하에 실시하고,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 **다. 시설유형에 따른 환기 지침** ○ (공동주택 및 아파트) ▶ 세대내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자연환기 하거나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하여 세대 내 유해 물질 제거 ▶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배기팬에 역류방지 댐퍼가 없을 경우 가급적 상시 가동 ▶ 역류방지 댐퍼가 있는 화장실 배기팬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화장실 문은 항상 닫은 상태를 유지하고 화장실 사용 전후에 환풍기 팬을 상시 가동 ▶ 주방 후드 사용 시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 유해 물질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창문 개방 ▶ 주기적으로 화장실 하수구에 물을 흘려 봉수를 채워줌 ▶ 변기 사용 시 변기 커버를 닫고 물을 내려 유해 물질이 부유하지 않도록 조치 ○ (중복도 형태의 시설) 다수의 실이 복도에 면하여 배치된 시설이며 대표유형으로 일부 수용시설, 군부대 등 포함 ▶ 출입문은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 ▶ 모든 실에서 창문은 항상 열린 상태로 유지하여 자연 환기 ▶ 일반적으로 실내공간의 환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입문 및 창문을 모두 개방하여 맞통풍이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나 이러한 유형에서는 실 간의 호흡기 감염병 확산 우려 ○ (쇼핑몰, 회사 사무실) ▶ 외기 도입량 100% 및 전 배기 방식의 기계환기 상시가동 권장, 내부순환모드 운전 지양 ▶ 이용 전 기계환기 또는 자연 환기 등을 통해 유해물질 배출 ▶ 화장실 배기팬 상시 가동 ○ (소규모 점포) ▶ 기계 환기설비 가동과 더불어 수시로 출입문, 창문 등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 ▶ 기계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화장실 환기팬 상시 가동 ▶ 주기적으로 화장실 하수구에 물을 흘려 봉수를 채워줌	〈역학조사팀〉 환기 지침 내용 정리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105	(신설)	○ (병원, 요양시설) ▶ 외기 도입량 100% 및 전 배기 방식의 기계환기 상시가동 권장, 내부순환 금지 모드로 운전 ▶ 기계환기 횟수는 외기 도입량 기준 2회/h로 설정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참고) - 환기횟수(회/h) : 1시간에 실내로 공급되는 외기의 총량을 방의 부피로 나눈 수 ▶ 병실 간 급/배기 풍량에 차이가 없게 풍량 조정 ○ (학교, 학원, 교육시설) ▶ 시설 사용 전 또는 후에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하여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의 유해물질 제거 ▶ 수업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마다 맞통풍 자연 환기(1회 환기 시 겨울철 3분 이상, 여름철 10분 이상) - 가능한 수업 중에도 모든 창문을 상시 개방하되 출입문은 항상 닫은 조건을 유지 ▶ 냉난방기 사용 시에도 수시로 환기 ▶ 화장실은 출입문을 닫고, 화장실 창문은 열린 상태로 유지하고, 환기용 배기팬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상시 가동하여 환기 ▶ 비말 방출량 많고 재실 밀도가 높은 경우 기계환기 설비 설치 권장 ○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식당, 카페 등 ▶ 시설 사용 전과 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열어둔 상태에서 송풍 등을 통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하여 냉난방기 내부 및 실내의 오염물질 제거 ▶ 외기 도입량 100% 및 전 배기 방식의 기계환기 상시 가동 권장 ▶ 출입문, 창문 등을 개방하여 상시로 맞통풍 자연 환기 ▶ 조리 중 주방 후드 가동 시 창문 개방 - 주방 후드 가동 시 실내공간에 음압이 형성되어 화장실 배관, 환기구로 유해물질 유입 가능 ▶ 주기적으로 화장실 배관에 물을 흘려 배관 봉수 확인 ○ (대형시장, 도매상가) ▶ 출입문, 자연 환기창은 상시 개방 ▶ 유인 팬이 있는 경우 상시 가동 ▶ 맞통풍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시설의 경우 기계 환기설비 설치 권장 ▶ 외기 도입량 100% 및 전 배기 방식의 기계환기 상시 가동 권장 ▶ 효율적인 기계 환기를 위하여 급·배기관 위치에 대한 전문가 자문 권장	〈역학조사팀〉 환기 지침 내용 정리
105	▶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지침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 「코로나19 관련 입국자 임시격리시설(실) 소독 안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실무안내」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독 ▶ ---------- - ---------- - ---------- (삭제)	〈환자관리지침팀〉 환기 지침 항목 신설에 따른 소독 항목 이동, 참고 지침 명확화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 colspan="4">Ⅺ. 질병개요</td></tr>
<tr><td>111</td><td>2. 발생 현황
가. 국외
○ '21.8.22 각 국가지역 등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4,619,976,274건 실시
○ '21.8.23. 각 국가지역 등에서 환자 211,730,035명 발생, 4,430,697명 사망</td><td>2. ————
가. ——
○ '21.11.14. ———————————— 7,307,892,664건 실시
○ '21.11.17. ——————— 254,256,432명 발생, 5,112,461명 사망</td><td>〈환자관리지침팀 지침관리계〉
현황 현행화</td></tr>
<tr><td>111</td><td>출처: WHO Dashboard('21.8.23.)
<table><tr><th>구분</th><th>7일 내 신규 발생현황</th><th>누적 발생현황</th><th>7일 내 신규 사망현황</th><th>누적 사망현황</th></tr><tr><td>미주</td><td>1,436,242</td><td>81,824,784</td><td>20,826</td><td>2,074,302</td></tr><tr><td>유럽</td><td>1,147,899</td><td>63,790,934</td><td>11,949</td><td>1,255,791</td></tr><tr><td>동남아시아</td><td>584,795</td><td>40,584,666</td><td>16,810</td><td>629,604</td></tr><tr><td>지중해 동부</td><td>445,882</td><td>14,112,751</td><td>7,224</td><td>257,624</td></tr><tr><td>아프리카</td><td>181,539</td><td>5,497,902</td><td>3,905</td><td>130,785</td></tr><tr><td>서태평양</td><td>522,150</td><td>5,918,234</td><td>6,208</td><td>82,578</td></tr></table></td><td>출처: WHO Dashboard('21.11.18.)
<table><tr><th>구분</th><th>7일 내 신규 발생현황</th><th>누적 발생현황</th><th>7일 내 신규 사망현황</th><th>누적 사망현황</th></tr><tr><td>미주</td><td>803,781</td><td>95,396,419</td><td>11,418</td><td>2,324,139</td></tr><tr><td>유럽</td><td>2,247,912</td><td>81,894,394</td><td>28,879</td><td>1,493,570</td></tr><tr><td>동남아시아</td><td>143,414</td><td>44,327,019</td><td>3,049</td><td>700,830</td></tr><tr><td>지중해 동부</td><td>96,171</td><td>16,606,067</td><td>1,978</td><td>306,272</td></tr><tr><td>아프리카</td><td>11,497</td><td>6,190,015</td><td>479</td><td>151,881</td></tr><tr><td>서태평양</td><td>173,337</td><td>9,841,754</td><td>2,642</td><td>135,756</td></tr></table></td><td>〈환자관리지침팀 지침관리계〉
WHO Dashboard 현행화</td></tr>
<tr><td>112</td><td>
</td><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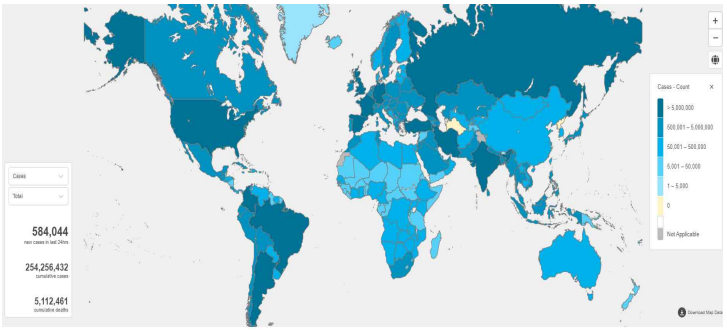
</td><td>〈환자관리지침팀 지침관리계〉
WHO GIS 현행화
확진환자 및 예방접종 현황</td></tr>
<tr><td>112</td><td>나. 국내
○ '21.8.24. 총 239,287명 발생, 2,228명 사망</td><td>나. ---
○ '21.11.18. 총 406,065명 발생, 3,187명 사망</td><td>〈환자관리지침팀 지침관리계〉
국내 현황 업데이트</td></tr>
</table>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120	5. 임상적 특성 나. 임상분류 3) 중증폐렴 다. 중증으로 진행하는 위험요인 ○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만성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질환, 면역억제자, 만성 간질환 등 기저질환자 - 영국의 전향적 관찰 코호트 연구에서 대부분의 기저질환은 만성 심장질환(31%), 합병증이 없는 당뇨(21%), 만성폐질환(18%), 만성 신질환(16%) 등임	5. -------- 나. ------ 3) ------ 다. ---------- ○ ---------- ---------- ---------- - ---------- 동일집단(코호트) 연구에서 -------- ---------- ----------	〈역학조사팀〉 자구 수정
122	8. 예방 백신 ▶ 예방 백신과 관련된 정보는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참고	8. ------- ▶ ----------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 (https://ncv.kdca.go.kr/) ---	〈환자관리지침팀 지침관리계〉 국내 백신의 정보 확인 가능한 질병청 홈페이지 안내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서 식			
133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의사환자 등으로 기 신고된 환자가 확진 시에는 감염병웹보고 환자구분을 '확진환자'로 변경보고 후 기초역학조사서 등록 ※ 등록 위치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역학조사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조사자: 관할시도 / 조사보건소 / 조사자성명 · 연락처 (사무실)(휴대폰) · 조사일 ___년___월___일 · 신고기관 확진번호 · 검사기관 · 격리종류 및 장소 □자가, □시설, □병원 (장소명:) 확 진 일 ___년___월___일 · 검 사 일 ___년___월___일 · 격리시작일 ___년___월___일 **1. 인적사항**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1.1 성명 · 1.2 주민등록번호 - · 1.3 성별 ○남 ○여 1.4 국적 ○국내 ○해외 ( ) · 1.5 거주지 주소 1.6 연락처 (환자)(보호자) · 1.7 직업 (직종명, 학교명, 의료기관명 등) 1.8 의료기관 종사자 ○해당있음 (□의사 □간호사 □기타(방사선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이송요원 , 이 외_____) ○해당없음 1.9 등록장애인 여부 ○ 예 ○ 아니요 · 1.10 장애유형 □ 지체 □ 정신 등 · 1.11 장애정도 □ 중증 □ 경증 **2. 증상 및 기저질환**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2.1 증상 유무 ○ 있음 (2.2, 2.3 작성) ○ 없음 · 2.2 증상발현일 ___년___월___일 2.3 최초증상: □ 발열(주관적 호소 포함) ○ 있음 (_ . _ ℃) ○ 없음 · □ 호흡기증상 ○ 있음 ☞ □ 기침 □ 가래 □ 인후통 □ 호흡곤란 ○ 없음 · □ 호흡기증상 외 ○있음 ☞ □ 근육통 □ 두통 □ 오한 □ 미각소실 □ 후각소실 □ 기타( ) ○없음 · □ 폐렴 ○ 있음 ☞ 흉부영상 확인여부(CT/X-ray) ○ 예 ○ 아니오 ○ 없음 2.4 기저 질환 ○ 예 (기저질환:) ○ 아니요 · 2.5 임신 여부 ○ 예 (주) ○ 아니요 2.6 치료상태(확진당시) □일반치료 □산소치료(비강캐뉼라, 마스크) □인공호흡 □ECMO □사망 □조사중 □기타( ) · 2.7 흡연 여부 ○ 현재흡연 ○ 과거흡연 ○ 비흡연 2.8 실험실 진단검사 결과 Ct값: 실험기관 · RdRp gene · E gene · N gene 2.9 검사경위 ○ 본인이 판단 ○ 의사의 소견 및 권장 ○ 해외방문력 ○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 가족 또는 지인이 확진환자 2.10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여부 ○ 예 ○ 아니오 · □접종장소 ○ 국내(장소명:) ○ 국외(국가명:) · □백신종류 1차 / 2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기타 · □접종일 ___년___월___일	**서식 6** 코로나19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 의사환자 등으로 기 신고된 환자가 확진 시에는 감염병웹보고 환자구분을 '확진환자'로 변경보고 후 기초역학조사서 등록 ※ 등록 위치 :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 역학조사 - 기초역학조사서(확진환자) 조사자: 관할시도 / 조사보건소 / 조사자성명 · 연락처 (사무실)(휴대폰) · 조사일 년 월 일 · 신고기관 확진번호 · 검사기관 · 격리종류/장소 □자가, □시설, □병원 ( ) · 확 진 일 년 월 일 · 검 사 일 년 월 일 · 격리시작일 년 월 일 **1. 인적사항**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1.1 성명 · 1.2 주민등록번호 - · 1.3 성별 ○남 ○여 1.4 국적 ○내국인 ○외국인(국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1.5 거주지 주소 1.6 연락처 (환자)(보호자) · 1.7 직업 (직종명, 직업주소, 마지막 출근일: 월 일) ○무직 · 1.8 의료기관 종사자 ○예 ☞ □의사 □간호사 □기타 ○아니오 1.9 등록장애인 여부 ○ 예 ○ 아니오 · 1.10 장애유형 □ 지체 □ 정신 등 · 1.11 장애정도 □ 중증 □ 경증 **2. 증상 및 기저질환**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2.1 증상 유무 ○ 있음 (☞ 2.2, 2.3 작성) ○ 없음 · 2.2 증상발현일 년 월 일 2.3 최초증상: □ 발열(주관적 호소 포함) ○ 있음 (_ . _ ℃) ○ 없음 · □ 호흡기증상 ○ 있음 ☞ □ 기침 □ 가래 □ 인후통 □ 호흡곤란 ○ 없음 · □ 호흡기증상 외 ○ 있음 ☞ □ 근육통 □ 두통 □ 오한 □ 미각소실 □ 후각소실 □ 기타( ) ○ 없음 · □ 폐렴 ○ 있음 ☞ 흉부영상 확인여부(CT/X-ray) ○ 예 ○ 아니오 ○ 없음 2.4 기저질환 ○ 예 ( ) ○ 아니오 · 2.5 키/몸무게 cm/kg · 2.6 임신 여부 ○ 예 (주) ○ 아니오 · 2.7 흡연 여부 ○ 예 ○ 아니오 2.8 검사경위 ○ 본인 판단 ○ 의사소견 및 권장 ○ 해외방문력(☞3.1 작성) ○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3.3 작성) ○ 가족/지인이 확진환자(☞3.2 작성) 2.9 진단검사(Ct값) 실험기관 · RdRp gene · E gene · N gene 2.10 예방접종: □접종여부 ○ 예 ○ 아니오 · □접종장소 ○ 국내 ( ) ○ 국외 ( ) · □백신종류 1차 / 2차 / 3차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기타( ) · □접종일 년 월 일 **3. 추정 감염경로** (최초증상 발생일 14일전부터 현재까지, ☑표시 또는 기재) 3.1 해외 체류/방문 ○ 유 ☞ 국가명 , 입국일 년 월 일 ○ 무 3.2 확진자 접촉 ※필수입력 ○ 유 ☞ 관계: □가족(동거인), □(직장)동료, □지인, □기타 , 이름: , 확진자번호: , 최종 접촉일: 년 월 일 ○ 무 3.3 추정 감염장소 ※필수입력: ○ 의료기관/요양시설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 ○ 가족/지인 □자택 □기타 · ○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클럽/주점/홀덤펍 □PC방 □마사지업소 □골프·당구·볼링/기타 □식당 □카페 □영화관/공연장/스포츠관람 □결혼식장 □장례식장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놀이공원/워터파크 □전통시장 □상점·백화점 □숙박시설 □기타 · ○ 사업장 □제조업 □건설업 □운송/물류업 □금융/서비스업 □농수산업 □도소매업 □콜센터 □기타 · ○ 집회/행사 □집회 □행사 □방문판매관련 등 설명회 · ○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기타 · ○ 교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학원 · ○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교정시설 □기타 · ○ 기타 □ 기타 ( ) · ○ 시설명 ※필수입력 ( ) 3.4 집단발생 관련 ※시도/권역 확인 ○ 유 ☞ □가족/지인 □의료기관 □사업장 □요양·정신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종교시설 □기타 ○ 무	〈역학조사팀〉 외국인 정보, 직업주소 및 마지막 출근일, 키/몸무게, 3차 예방접종 정보, 확진자 접촉 정보 및 추정 감염경로 상세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134	**3. 추정 감염경로** (최초증상 발병일 14일전부터 현재까지, ☑표시 또는 기재) 3.1 해외방문 (체류국가) ○ 유 (국가명 ,입국일 년 월 일) ○ 무 3.2 확진자 접촉 ○ 유 (□ 가족(동거인) 접촉자, 이름 : 확진자번호 :) 관계 : □ 가족(동거인) 이외 접촉자, 이름 : 확진자번호 :) 관계 : ○ 최종 접촉일 년 월 일 ○ 무 3.3 집단발병 관련 ○ 유 (□ 가족(동거인) □ 의료기관 □ 종교관련 □ 요양 · 정신시설 □ 학교 □ 기타) ○ 무 3.4 기타 3.5 선행확진자 ※ 시도/권역 확인 (우선순위 순으로 기재) 1. 확진자번호 : 이름 : 관계 : 노출장소 : 최초노출일 : 최종노출일 : 2. 확진자번호 : 이름 : 관계 : 노출장소 : 최초노출일 : 최종노출일 : 3. 확진자번호 : 이름 : 관계 : 노출장소 : 최초노출일 : 최종노출일 : **4. 집단시설(의료기관, 시설 등) 이용력**(최초증상 발병일 14일전부터 현재까지, ☑표시 또는 기재) ○ 유 (기관/시설명 , □ 입소(입원) 중(입소일: 년 월 일) □ 퇴소(퇴원) (퇴소일: 년 월 일) ○ 무 **5. 가족(동거인)및 집단시설 접촉자**(최초증상 발병일 2일전부터 현재까지 접촉한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 ☑표시 또는 기재 5.1 가족(동거인) 접촉자 ○ 유 (인원 : 명) ○ 무 5.2 시설 접촉자 (종교, 요양, 정신 시설, 학교, 학원 등) ○ 유 (시설명 : , 인원: 명) ○ 무 5.3 의료기관 접촉자 ○ 유 (의료기관명 : , 인원: 명) ○ 무 **6. 사례분류 결과** ※시도/권역 확인 6.1 대분류 ○ 해외유입 ○ 해외유입관련 ○ 요양 ○ 기타 집단 ○ 확진자접촉 ○ 미분류 6.2 중분류 6.3 참고사항	**4. 가족(동거인)및 집단시설 접촉자** (최초증상 발병일 2일전부터 현재까지 접촉한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 ☑표시 또는 기재) 4.1 가족(동거인) 접촉자 ○ 유 (인원 수 : 명) ☞ 이름: , 관계: , 연락처: 010 - - 유해당 인원 전부 입력 ○ 무 4.2 시설(직장) 접촉자 (요양·정신시설/학교, 학원/종교시설 등) ○ 유 (시설(직장)명 : , 인원 수: 명) ☞ 이름: , 관계: , 연락처: 010 - - 유해당 인원 전부 입력 ○ 무 4.3 의료기관 접촉자 ○ 유 (의료기관명 : , 인원 수: 명) ☞ 이름: , 관계: , 연락처: 010 - - 유해당 인원 전부 입력 ○ 무 **5. 재택(자가) 치료** (해당사항에 ☑표시 또는 기재) 5.1 재택(자가) 치료 의향 ○ 예 ○ 아니요 (비고: 업무요인 해당 유무, 장애 유무 등) 5.2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격리 가능 여부 ○ 예 ○ 아니요 (비고: 독립된 공간 유무, 의사소통 가능 여부 등) 5.3 귀하의 원활한 병상배정을 위해 지자체(보건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귀하의 기저질환력 등 의료정보를 열람 · 활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요 **6. 사례분류** ※시도/권역 확인 6.1 분류 ○해외유입 ○해외유입관련 ○병원 · 요양원 ○기타 집단 ○확진자접촉 ○미분류 6.2 참고사항 집단 명 등	〈역학조사팀〉 가족 및 집단시설 접촉자 정보, 재택(자가) 치료 의향 및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 격리 가능 여부, 병상배정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여부, 감염병예방법 근거로 타기관 정보 제공 사항 안내
137	〈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 반드시 본 양식대로 엑셀파일(시스템 : 접촉자 엑셀 등록 > 엑셀양식다운로드)로 작성하여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에 업로드	서식 9 코로나19 접촉자 조사 양식 ※ 반드시 본 양식대로 엑셀파일(시스템 : 접촉자 엑셀 등록 > 엑셀양식다운로드)로 작성하여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 에 업로드	〈역학조사팀〉 자구 수정 코호트격리→동일집단(코호트)격리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139	〈서식 10〉 코로나19 집단사례조사서 ○ (위험도평가) - 위험요인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평가표) * 시설 유형에 따른 보완/수정 가능	○ (--------) - ---------- * ----------	〈역학조사팀〉 위험도평가 항목별 점수 세분화 밀폐도 세부 분류 및 위험도 종합평가 점수 기준 수정 등

현행(10-1판)

점검항목	점검결과 (세 가지 중 해당에 V표시) 낮음(0점)	중간(1점)	높음(2점)
(밀폐도) 건물 외부 공기로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가 가능한가?	창문 · 출입문 통해 상시 환기 가능	2~3회/일 이상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가능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불가 (지하에 위치 등)
(밀집도) 이용자간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이용자간 항상 2m 유지 가능	이용자간 1m이상 유지 가능 *테이블간, 좌석간	이용자간 1m거리 유지 불가 *테이블간, 좌석간
(지속도) 이용자의 평균 체류시간은?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시간 이상
(활동도) 침방울(비말) 발생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정도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 수준의 침방울 발생	적극적 침방울발생 (노래, 춤, 격한 운동, 응원등)
(관리도) 방역 수칙 준수정도는? (아래 항목에 V표시)	5개 이상	4개	0~3개

준수	미준수	방역 수칙 항목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게시 · 안내하였는가?
		손소독제 비치 및 이용자 명부작성 하였는가?
		직원과 이용자는 모두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였는가?
		주기적인 환기(자연환기, 기계환기)를 실시하였는가?
		자주 손이 닿는 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였는가?
		(식당카페)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m² 이상)중 한가지 이상 준수 하였는가 ?

□ 개선 및 대안

위험도 종합 평가	( ) 점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점 이상)

10-2판 개정(안)

점검항목	낮음(-2점)	보통(0점)	높음(1점)	매우높음(2점)
(밀집도) 이용자간 거리두기	-	이용자간 항상 2m 유지 가능	이용자간 1m 이상 유지가능	이용자간 1m 이상 유지불가
(방출량/노출량) 직원과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수준	-	마스크 상시착용	마스크 일부 미착용 (수면/간식섭취 등)	마스크 미착용 (가려, 흡연장 등)
(활동도) 비말발생도 및 호흡량	-	비말발생 거의 없음	일상적 대화/휴식/식사	비말방출 및 호흡량이 큰 활동 (노래/춤/운동/강의 등)
(지속도) 이용자 체류시간	-	30분 이내	1시간 이내 (1점) 2~24시간 (3점)	1~2시간 (2점) 24시간 이상 (4점)
(밀폐도) 환기창을 통한 자연환기량	-	(미서기창)	(여닫이창)	자연환기 불가 (지하층, 환기창없음)
(밀폐도) 자연환기 가능한 평면구조	(탁월함/상시환기)	(탁월함/수시환기)	(직각배치/수시환기)	(1면/중복도/없음)
(밀폐도) 기계환기	상시 기계환기 (외기도입100%)	기계환기 (일부외기도입)	기계환기 없음 (쓰는 가동안함)	기계환기 (내부순환)
(관리도) 방역수칙 준수	-	3개 이상	2개	1개 이하

(아래 항목에 V표시)

준수	미준수	방역수칙 항목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게시·안내하였는가?
		손소독제 비치 및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였는가?
		자주 손이 닿는곳(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 및 공용물품의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였는가?
		(식당·카페)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면적 60m² 이상) 중 한가지 이상 준수 하였는가?

건물내 호흡기 감염병의 위험도 종합평가	( ) 점

[위험도 평가기준] 0~7점 : 위험도 보통, 8~11점 : 위험도 높음, 12점 이상 : 위험도 매우높음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141</td><td>〈서식 11〉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조사서
▶ 환자조사
<table><tr><td rowspan="2">□
백신종류</td><td>1차</td><td>□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기타</td><td rowspan="2">□
접종일</td><td>년 월 일</td></tr><tr><td>2차</td><td>□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기타</td><td>년 월 일</td></tr></table></td><td>▶ ------
<table><tr><td rowspan="3">□
백신종류</td><td>--</td><td>□---- □----
□---------- □--- □---</td><td rowspan="3">□
접종일</td><td>-- -- --</td></tr><tr><td>--</td><td>□---- □----
□---------- □--- □---</td><td>-- -- --</td></tr><tr><td>3차</td><td>□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기타</td><td>년 월 일</td></tr></table></td><td>〈역학조사팀〉
3차 백신종류 및 접종일 항목 추가</td></tr>
<tr><td>152</td><td>〈서식 21〉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 신청서
위의 신청인 대한민국 입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강화된 특별검역절차를 받고 입국 후 14일간 격리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키는 조건으로 일시적 격리해제 허가를 신청합니다.</td><td>----------
---------- 10일간 ----------

----------</td><td>〈환자관리지침팀〉
격리기간 조정</td></tr>
<tr><td>153</td><td>〈서식 22〉 장례참석에 따른 일시적 격리해제서
위의 일시적 격리해제 대상자는 대한민국 입국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강화된 특별검역절차를 받고 입국 후 14일간 격리의무를 이행하는 도중 위와 같은 사유로 일시적 격리해제를 신청한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일시적 격리해제를 허가합니다.</td><td>----------
---------- 10일간

--------</td><td>〈환자관리지침팀〉
격리기간 조정</td></tr>
<tr><td colspan="4">부 록</td></tr>
<tr><td>168</td><td>〈부록 2〉 자가격리자 전담부서와 보건부서의 역할 분류
□ 담당사무
(구분) 전담부서-담당사무
‣ 의약품 수령·전달, 생필품 구입·배달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적극 지원 (신설)</td><td>□ -------
‣ ----------
* 지원 취지를 악용(개인 기호식품 구입 · 전달 요구 등)하거나 사회 통념상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요구사항은 제외</td><td>〈격리관리팀〉
전담부서 업무 중 지원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 안내</td></tr>
</table>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169	〈부록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신설)	○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의무 - 모든 격리자는 격리 9~10일차에 PCR검사를 받아 음성이 확인된 경우 격리해제 됩니다. 음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격리해제 불가합니다.	〈격리관리팀〉 격리해제 전 검사 안내
169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 13)을 참조합니다.	○ ---------- 배출된 쓰레기는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자구 수정 분리수거 가능
170	○ 능동감시 기간동안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의 발열, 증상을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	〈격리관리팀〉 자가모니터링 기간 조정
171	〈부록 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 13)을 참조합니다.	○ ---------- 배출된 쓰레기는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자구 수정
172	〈부록 4의2〉 자가격리자의 일반진료 안내문 [진료 시급성과 대면 진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 1 시급한 진료가 사전 예정된 경우 : ①자가격리 기간 중에 시급한 진료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②자가격리 개시 후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③이후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 1 ---------- : ①---------- ②----------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	〈격리관리팀〉 담당공무원 업무 경감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172</td><td>2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 △담당공무원에게 알린 후 이동하되, △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연락이 어려울 정도의 응급상황인 경우 119에 우선 신고 후 사후 연락이 가능합니다.</td><td>2 ----------
: ---------- 동행하여 이동하되, ----------

-------</td><td>〈격리관리팀〉
응급상황 시 담당공무원 동행 필요 안내</td></tr>
<tr><td>178</td><td>〈부록 6〉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td><td>〈----〉 병상배정 원칙 및 환자 선별 질문지</td><td>〈환자관리지침팀/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부록 일부 본문 이동에 따른 제목 수정</td></tr>
<tr><td>179</td><td>□ 입원/생활치료센터/자가치료 선별을 위한 추가 질문지
<table>
<tr><td>작성일</td><td></td><td>확진일</td><td></td><td>증상발현일</td><td></td></tr>
<tr><td>성명</td><td></td><td>나이</td><td></td><td>성별</td><td></td></tr>
<tr><td>지역</td><td></td><td>주민번호</td><td></td><td>분류번호</td><td></td></tr>
<tr><td>항목</td><td colspan="2">세부사항</td><td>예</td><td>아니요</td></tr>
<tr><td>연령</td><td colspan="2">60세 이상</td><td></td><td></td></tr>
<tr><td rowspan="4">현재 증상</td><td colspan="2">의식 저하
※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td><td></td><td></td></tr>
<tr><td colspan="2">호흡곤란 혹은 이에 준하는 증상 호소
※ 숨이 참, 빠른 호흡, 가슴답답함,
(만 12세 이하) 청색증, 흉곽함몰, 코벌렁이(flaring) 등</td><td></td><td></td></tr>
<tr><td colspan="2">발열
※ 38.0°C 이상 혹은 주관적인 열감 호소</td><td></td><td></td></tr>
<tr><td colspan="2">(만12세 이하) 뚜렷한 음식섭취 (수유) 불량, 탈수</td><td></td><td></td></tr>
<tr><td rowspan="7">동반 질환 - 환자 상태</td><td colspan="2">당뇨</td><td></td><td></td></tr>
<tr><td colspan="2">투석환자</td><td></td><td></td></tr>
<tr><td colspan="2">만성폐질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기관지폐이형성증 등)</td><td></td><td></td></tr>
<tr><td colspan="2">심부전 등 심혈관 질환</td><td></td><td></td></tr>
<tr><td colspan="2">항암치료 중이거나 장기이식 환자</td><td></td><td></td></tr>
<tr><td colspan="2">와상 환자</td><td></td><td></td></tr>
<tr><td colspan="2">정신질환자
(조울증, 조현병 등)</td><td></td><td></td></tr>
<tr><td rowspan="6">동반 질환 - 환자 상태
(12세 이하 소아의 경우 추가 작성)</td><td colspan="2">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경우, 임신주수를 함께 기입해주세요)</td><td></td><td></td></tr>
<tr><td colspan="2">생후 3개월 미만</td><td></td><td></td></tr>
<tr><td colspan="2">혈류역학적 이상이 있는 심장질환 소아</td><td></td><td></td></tr>
<tr><td colspan="2">면역저하환자 혹은 면역억제요법 환자</td><td></td><td></td></tr>
<tr><td colspan="2">만성 대사성 질환 환자 (고도비만 등)</td><td></td><td></td></tr>
<tr><td colspan="2">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의 장애가 있거나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미숙아,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 유전학적 이상 등)</td><td></td><td></td></tr>
<tr><td rowspan="2">자가치료 가능 대상자</td><td colspan="2">무증상, 경증의 만 12세 이하 소아 중 보호자가 자가치료 동의</td><td></td><td></td></tr>
<tr><td colspan="2">12세 이하 또는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보호자 중 본인이 자가 치료 동의</td><td></td><td></td></tr>
</table></td><td>□ ---/---------/재택치료 ----------
<table>
<tr><td>작성일</td><td></td><td>확진일</td><td></td><td>증상발현일</td><td></td></tr>
<tr><td>성명</td><td></td><td>나이</td><td></td><td>성별</td><td></td></tr>
<tr><td>지역</td><td></td><td>주민번호</td><td></td><td>분류번호</td><td></td></tr>
<tr><td>항목</td><td colspan="2">세부사항</td><td>예</td><td>아니요</td></tr>
<tr><td>백신접종</td><td colspan="2">백신접종 완료</td><td></td><td></td></tr>
<tr><td>연령</td><td colspan="2">70세 이상</td><td></td><td></td></tr>
<tr><td rowspan="3">현재 증상</td><td colspan="2">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td><td></td><td></td></tr>
<tr><td colspan="2">호흡곤란
※ 일상생활 중에도 숨이 참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호소(빠른 호흡, 가슴답답함,
만 12세 이하의 경우 청색증, 흉곽함몰, 코벌렁이(flaring) 등)</td><td></td><td></td></tr>
<tr><td colspan="2">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td><td></td><td></td></tr>
<tr><td rowspan="9">동반 질환 - 환자 상태</td><td colspan="2">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td><td></td><td></td></tr>
<tr><td colspan="2">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td><td></td><td></td></tr>
<tr><td colspan="2">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td><td></td><td></td></tr>
<tr><td colspan="2">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td><td></td><td></td></tr>
<tr><td colspan="2">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td><td></td><td></td></tr>
<tr><td colspan="2">와상환자
※ 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td><td></td><td></td></tr>
<tr><td colspan="2">고도비만 여부 (키: cm, 몸무게: kg)
※ BMI 〉 30</td><td></td><td></td></tr>
<tr><td colspan="2">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td><td></td><td></td></tr>
<tr><td colspan="2">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 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미성,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에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미숙아,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 유전학적 이상 등)</td><td></td><td></td></tr>
<tr><td rowspan="4">재택치료 가능 대상자</td><td colspan="2">임원요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보호자 포함), 무증상·경증인 경우 재택치료 의향 있음 또는 동의함</td><td></td><td></td></tr>
<tr><td colspan="2">소아, 70세 이상(예방접종완료자) 또는 장애가 있는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경우, 확진자의 건강상태 확인이 가능하고, 임원요인이 없는 보호자가 있음</td><td></td><td></td></tr>
<tr><td colspan="2">고시원·쉐어하우스·노숙 등 격리가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해당하지 않음</td><td></td><td></td></tr>
<tr><td colspan="2">건강·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가능함</td><td></td><td></td></tr>
<tr><td>임상시험 참여 의향</td><td colspan="2">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의향 여부
※ 다만,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외의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배정이 배정될 수 있음</td><td></td><td></td></tr>
<tr><td>비고(특이사항)</td><td colspan="4">※ 그 외 확인된 추가 사항에 대해 역학조사관 또는 병상 배정반에서 작성</td></tr>
</table></td><td>〈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재택치료 용어 수정
추가 설문지 전체 수정
〈중수본 환자병상지원팀〉
임상시험 참여 의향 항목 추가</td></tr>
</table>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
<td>180</td>
<td>○ 항목정의서
<table>
<tr><th>항 목</th><th>설 명</th></tr>
<tr><td>작성일</td><td>시·군·구에서 입원/생활치료센터 선별을 위한 추가질문지를 작성하는 날짜</td></tr>
<tr><td>확진일</td><td>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된 날짜</td></tr>
<tr><td>증상발현일</td><td>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발생한 날짜</td></tr>
<tr><td>성명</td><td>환자의 성명으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td></tr>
<tr><td>나이</td><td>환자의 나이</td></tr>
<tr><td>성별</td><td>환자의 생물학적 성별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성별</td></tr>
<tr><td>지역</td><td>환자의 실거주지(시·도 단위)</td></tr>
<tr><td>주민번호</td><td>주민등록증 혹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td></tr>
<tr><td>분류번호</td><td>각 시·군·구 혹은 질병관리청에서 부여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일련번호</td></tr>
<tr><td>60세 이상</td><td>나이가 60세 이상</td></tr>
<tr><td>의식 저하</td><td>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환자에게 나타난 의식장애(주관적 호소 및 객관적 관찰 포함)</td></tr>
<tr><td>호흡곤란 혹은 이에 준하는 증상 호소</td><td>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숨이 참, 빠른 호흡, 가슴답답함, 청색증, 흉곽함몰, 호흡곤란에 따른 이상징후(코 벌렁임(flaring)) 등
※ 참고: 연령별 정상 호흡수
<table>
<tr><th>연령</th><th>0~<3개월</th><th>3~<12개월</th><th>1~4세</th><th>5~12세</th><th>>12세</th></tr>
<tr><td>호흡수/분</td><td>30~60</td><td>25~50</td><td>20~40</td><td>20~30</td><td>12~16</td></tr>
</table></td></tr>
<tr><td>발열</td><td>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열감 혹은 체온 측정 후 38.0°C 이상</td></tr>
<tr><td>당뇨</td><td>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1형 혹은 2형 당뇨</td></tr>
<tr><td>투석환자</td><td>코로나19 확진 이전 혈액투석 혹은 복막투석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던 환자</td></tr>
<tr><td>만성폐질환</td><td>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만성폐질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종 등)</td></tr>
<tr><td>심부전</td><td>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심부전 혹은 이에 준하는 심혈관 질환</td></tr>
<tr><td>항암치료 중이거나 장기이식 환자</td><td>코로나19 확진 당시 항암치료 중이거나 장기이식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td></tr>
<tr><td>와상 환자</td><td>코로나19 관련 증상과 관계없이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고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지내야하는 환자</td></tr>
<tr><td>정신질환자</td><td>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조현병,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자</td></tr>
</table></td>
<td>○ ----------
<table>
<tr><th>항 목</th><th>설 명</th></tr>
<tr><td>작성일</td><td>시·군·구에서 입원/생활치료센터 선별을 위한 추가질문지를 작성하는 날짜</td></tr>
<tr><td>확진일</td><td>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된 날짜</td></tr>
<tr><td>증상발현일</td><td>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발생한 날짜</td></tr>
<tr><td>성명</td><td>환자의 성명으로,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td></tr>
<tr><td>나이</td><td>환자의 나이</td></tr>
<tr><td>성별</td><td>환자의 생물학적 성별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성별</td></tr>
<tr><td>지역</td><td>환자의 실거주지(시·도 단위)</td></tr>
<tr><td>주민번호</td><td>주민등록증 혹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번호</td></tr>
<tr><td>분류번호</td><td>각 시·군·구 혹은 질병관리청에서 부여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일련번호</td></tr>
<tr><td>70세 이상</td><td>나이가 70세 이상</td></tr>
<tr><td>의식장애</td><td>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 주관적 호소 및 객관적 관찰 포함)</td></tr>
<tr><td>호흡곤란</td><td>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처음 발생한 이후 환자가 주관적으로 호소하는 숨이 참 또는 이에 준하는 증상호소(빠른 호흡, 가슴답답함, 만 12세 이하의 경우 청색증, 흉곽함몰, 코벌렁이((flaring) 등)
※ 참고: 연령별 정상 호흡수
<table>
<tr><th>연령</th><th>0~<3개월</th><th>3~<12개월</th><th>1~4세</th><th>5~12세</th><th>>12세</th></tr>
<tr><td>호흡수/분</td><td>30~60</td><td>25~50</td><td>20~40</td><td>20~30</td><td>12~16</td></tr>
</table></td></tr>
<tr><td>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td><td>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나타난 이후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0°C 이상의 발열 또는 이에 준하여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열감</td></tr>
<tr><td>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td><td>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1형 혹은 2형 당뇨로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td></tr>
<tr><td>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td><td>코로나19 확진 이전 혈액투석 혹은 복막투석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던 환자</td></tr>
<tr><td>만성폐질환, 천식</td><td>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만성폐질환(폐기종 등), 천식</td></tr>
<tr><td>심부전, 관상동맥질환</td><td>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혹은 이에 준하는 심혈관 질환</td></tr>
<tr><td>항암치료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td><td>코로나19 확진 당시 항암치료 중이거나 장기이식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td></tr>
<tr><td>와상환자</td><td>코로나19 관련 증상과 관계없이 기타 질병 등으로 인해 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지내는 자</td></tr>
</table></td>
<td>〈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추가 설문지 전체 수정</td>
</tr>
</table>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181</td><td>
<table>
<tr><th>항 목</th><th>설 명</th></tr>
<tr><td>임신부</td><td>코로나19 확진 이전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확인받은 자</td></tr>
<tr><td>뚜렷한 음식섭취(수유) 불량, 탈수</td><td>평소에 비해 음식섭취/수유량이 50-75% 미만으로 유지</td></tr>
<tr><td>생후 3개월 미만</td><td>확진일 기준 생후 3개월 미만 영아</td></tr>
<tr><td>혈류역학적 이상이 있는 심장질환 소아</td><td>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심장질환 소아
(※ 단순 심방중격결손 등은 제외)</td></tr>
<tr><td>면역저하환자 혹은 면역억제요법 환자</td><td>코로나19 확진 당시 항암치료 중이거나 장기이식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선천면역결핍환자</td></tr>
<tr><td>만성 대사성질환 환자</td><td>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만성대상성 질환 (고도비만 포함)</td></tr>
<tr><td>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의 장애가 있거나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td><td>미숙아,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 유전학적 이상 등</td></tr>
</table>
</td><td>
<table>
<tr><th>항 목</th><th>설 명</th></tr>
<tr><td>고도비만</td><td>BMI 〉 30
※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값</td></tr>
<tr><td>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td><td>코로나19 확진 이전 임상의사에 의해 진단된 조현병, 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자로,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td></tr>
<tr><td>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td><td>코로나19 확진 이전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확인받은 자로, 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td></tr>
<tr><td>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td><td>호흡곤란, 청색증, 흉곽함몰, 뚜렷한 음식섭취(수유)불량 및 탈수, 진단된 만성폐질환/심장질환/대사성질환/면역이상, 면역억제제 투여,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에 장애가 있거나 흡인 위험이 높은 경우(미숙아,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 질환, 유전학적 이상 등)</td></tr>
<tr><td>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 의향</td><td>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로, 임상 실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될 수 있음</td></tr>
</table>
</td><td>〈중수본 환자병상관리팀〉
추가 설문지 전체 수정</td></tr>
<tr><td>200
~
207</td><td>〈부록 11〉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검사전문기관 23개소]
[의료기관 173개소]</td><td>[--------- 25개소]
[------ : 180개소]</td><td>〈진단분석단〉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 현행화
(21.11.1. 기준, 총 205개소)</td></tr>
<tr><td>208</td><td>〈부록 12〉 소독 방법
코로나19 의사환자가 거주한 가정에서의 소독 방법
[청소 · 소독]
7. (폐기)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전용봉투에 넣는다.
8. (개인보호구 탈의)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방수성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9. (폐기물 처리)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참고자료 [부록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td><td>----------
[-------]
(삭제)
7. (----------) ----------

----
8. (폐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13)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삭제)</td><td>〈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해당 사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경우는 환경부 지침에 없음
환경부 코로나 폐기물 처리지침 중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 방안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td></tr>
</table>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10	코로나19 의사환자가 이용한 사업장에서의 소독 방법 [청소 · 소독] 7. (폐기)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전용봉투에 넣는다. 8. (개인보호구 탈의)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방수성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9. (폐기물 처리)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참고자료 [부록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참조	---------- [-------] (삭제) 7. (----------) ---------- ---------- ---------- ---------- 8. (폐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13)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삭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해당 사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경우는 환경부 지침에 없음 환경부 코로나 폐기물 처리지침 중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 방안을 준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213</td><td>소독 장소 및 상황에 따른 비교
<table>
<tr><th colspan="3">소독 장소 및 상황에 따른 비교</th></tr>
<tr><th>가 정</th><th>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th><th>코로나19 환자 등이 거주한 가정에서의 소독</th></tr>
<tr><td rowspan="2">개인보호구</td><td colspan="2">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td></tr>
<tr><td></td><td>*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글 등 착용</td></tr>
<tr><td>소독제</td><td colspan="2">· (소독제 선택) 환경부가 승인하는 소독제를 사용(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
· (대체 소독제) 이를 구할 수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액(1분간), 부식되는 표면 등은 알코올(70% 에탄올)</td></tr>
<tr><td rowspan="3">소독 범위</td><td colspan="2">· (기본 원칙) 비누와 물로 세척(특히, 더러워진 곳) 등 청소를 한 뒤 소독 실시</td></tr>
<tr><td colspan="2">· (일상 표면)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 (화장실 표면)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td></tr>
<tr><td>-</td><td>· (표면 소독) 자주 사용하는 표면 소독
· (바닥 소독) 바닥 소독
· (세탁) 온수 세탁</td></tr>
<tr><td>폐기물 처리</td><td>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넣어 폐기</td><td>폐기물 전용봉투에 넣어 폐기</td></tr>
<tr><td rowspan="2">주의사항</td><td colspan="2">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모니터링</td></tr>
<tr><td></td><td>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td></tr>
<tr><th>사업장</th><th>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th><th>코로나19 환자 등이 거주한 사업장에서의 소독</th></tr>
<tr><td>소독 계획</td><td>소독범위 계획 수립</td><td>환자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범위 계획 수립</td></tr>
<tr><td>소독 교육</td><td colspan="2">업무절차서 및 감염예방 교육</td></tr>
<tr><td rowspan="2">개인보호구</td><td colspan="2">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td></tr>
<tr><td>-</td><td>*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글 등 착용</td></tr>
<tr><td>소독제</td><td colspan="2">· (소독제 선택) 환경부가 승인하는 소독제를 사용(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
· (대체 소독제) 이를 구할 수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액(1분간), 부식되는 표면 등은 알코올(70% 에탄올)</td></tr>
<tr><td rowspan="2">자주 사용하는 표면</td><td colspan="2">· (기본 원칙) 비누와 물로 세척(특히, 더러워진 곳) 등 청소를 한 뒤 소독 실시</td></tr>
<tr><td colspan="2">· (일상 표면)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전화기,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 (화장실 표면)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td></tr>
<tr><td>소독 범위</td><td>-</td><td>· (표면 소독) 자주 사용하는 표면 소독
· (바닥 소독) 바닥 소독
· (세탁) 온수 세탁</td></tr>
<tr><td>폐기물 처리</td><td>일반 폐기물과 동일하게 넣어 폐기</td><td>폐기물 전용봉투에 넣어 폐기</td></tr>
<tr><td rowspan="2">주의사항</td><td colspan="2">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모니터링</td></tr>
<tr><td>-</td><td>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td></tr>
</table></td><td>----------
<table>
<tr><th colspan="3">소독 장소 및 상황에 따른 비교</th></tr>
<tr><th>가 정</th><th>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th><th>코로나19 환자 등이 거주한 가정에서의 소독</th></tr>
<tr><td rowspan="2">개인보호구</td><td colspan="2">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td></tr>
<tr><td></td><td>*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글 등 착용</td></tr>
<tr><td>소독제</td><td colspan="2">· (소독제 선택) 환경부가 승인하는 소독제를 사용(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
· (대체 소독제) 이를 구할 수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액(1분간), 부식되는 표면 등은 알코올(70% 에탄올)</td></tr>
<tr><td rowspan="3">소독 범위</td><td colspan="2">· (기본 원칙) 비누와 물로 세척(특히, 더러워진 곳) 등 청소를 한 뒤 소독 실시</td></tr>
<tr><td colspan="2">· (일상 표면)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 (화장실 표면)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td></tr>
<tr><td>-</td><td>· (표면 소독) 자주 사용하는 표면 소독
· (바닥 소독) 바닥 소독
· (세탁) 온수 세탁</td></tr>
<tr><td rowspan="2">주의사항</td><td colspan="2">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모니터링</td></tr>
<tr><td></td><td>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td></tr>
<tr><th>사업장</th><th>예방을 위한 일상 소독</th><th>코로나19 환자 등이 거주한 사업장에서의 소독</th></tr>
<tr><td>소독 계획</td><td>소독범위 계획 수립</td><td>환자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범위 계획 수립</td></tr>
<tr><td>소독 교육</td><td colspan="2">업무절차서 및 감염예방 교육</td></tr>
<tr><td rowspan="2">개인보호구</td><td colspan="2">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td></tr>
<tr><td>-</td><td>* 상황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방수성 앞치마, 장화, 고글 등 착용</td></tr>
<tr><td>소독제</td><td colspan="2">· (소독제 선택) 환경부가 승인하는 소독제를 사용(설명서의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
· (대체 소독제) 이를 구할 수 없으면 차아염소산나트륨(원액 5%) 1,000ppm 희석액(1분간), 부식되는 표면 등은 알코올(70% 에탄올)</td></tr>
<tr><td rowspan="2">자주 사용하는 표면</td><td colspan="2">· (기본 원칙) 비누와 물로 세척(특히, 더러워진 곳) 등 청소를 한 뒤 소독 실시</td></tr>
<tr><td colspan="2">· (일상 표면)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전화기,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엘리베이터 버튼 등
· (화장실 표면) 수도꼭지, 문고리, 변기 덮개, 욕조 등</td></tr>
<tr><td>소독 범위</td><td>-</td><td>· (표면 소독) 자주 사용하는 표면 소독
· (바닥 소독) 바닥 소독
· (세탁) 온수 세탁</td></tr>
<tr><td rowspan="2">주의사항</td><td colspan="2">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모니터링</td></tr>
<tr><td>-</td><td>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td></tr>
</table></td><td>〈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폐기물처리 부분 삭제
해당 사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경우는 환경부 지침에 없음</td></tr>
<tr><td>214</td><td>〈부록 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대책(제3판) 발췌</td><td>〈------〉 ---------- 특별 대책 발췌</td><td>〈환자관리지침팀〉
지침 기수 삭제</td></tr>
</table>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16 ~ 217	□ 자가격리자 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 ○ 발생된 폐기물을 매뉴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처리 ① 증상 미발생 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 (배출) 배출자제를 원칙으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출하며, 자가 격리자는 폐기물(음식물쓰레기 포함)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고 보건소에 연락하여 배출 ▶ 전용봉투가 없는 경우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여 2중 밀폐 - (수거·처리) 자가격리자를 모니터하는 지자체 보건담당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생활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하여 생활폐기물로 소각처리 ▶ 다만 지자체 여건상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이 소각이 아닌 매립 등의 방식일 경우 기존 방식으로 안전하게 처리 ②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또는 확진판정 받은 자가격리장소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의 경우 - (배출) 폐기물을 소독한 후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보관 - (수거·처리) 보건소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킨 후 보건소에서 계약한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를 통해 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담아 수거하여 당일 소각처리	□ ---------- ○ ---------- ① 일반자가격리자(미확진자)에게서 발생된 폐기물의 경우 - (보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3가지로 분리하여 소독한 후 보관 ▶ 일반쓰레기는 이중밀봉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종량제 봉투, 지자체가 제공한 봉투 사용가능)에 담아 보관 - (배출) 자가격리가 종료된 후 전용봉투에 보관 중인 일반쓰레기는 밀봉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상부 및 외부 소독하고 배출(이중밀봉),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소독 후 품목별 분리배출 ▶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또는 전용용기)에 넣어 상부 및 외부 소독하고, 재활용품은 표면 소독 후 배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지침 참조) ▶ 음식물쓰레기는 해당 지역 기존의 종량제 배출방식(봉투, RFID, 칩 · 스티커 등)에 따라 배출 - (예외적 배출허용) 자가격리 중 배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폐기물 배출이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는 배출허용 여부를 판단하여 시·군·구 생활폐기물 담당부서(생활폐기물처리업체)와 협조하여 수거 · 처리 ▶ 수거 · 처리 과정에서 수시로 소독하고, 수거한 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소각이 아닌 매립 등의 방식일 경우 지자체의 기존 방식으로 안전하게 분리수거 · 처리 ②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 받은자가 병원 등으로 이송되는 경우 격리장소에서 발생된 폐기물 - (보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3가지로 분리하여 소독한 후 보관 ▶ 일반쓰레기는 이중밀봉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종량제 봉투, 지자체가 제공한 봉투 사용가능)에 담아 보관 - (배출) 확진자가 치료센터, 병원 등으로 이송되고 3일(72시간) 이후 전용봉투에 보관 중인 일반쓰레기는 밀봉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상부 및 외부 소독하고 배출(이중밀봉),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소독 후 품목별 분리배출 ▶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또는 전용용기)에 넣어 상부 및 외부 소독하고, 재활용품은 표면 소독 후 배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지침 참조) ▶ 음식물쓰레기는 해당 지역 기존의 종량제 배출방식(봉투, RFID, 칩 · 스티커 등)에 따라 배출 ③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에 발생시킨 폐기물의 경우 - (보관)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3가지로 분리하여 소독한 후 보관 ▶ 일반쓰레기는 이중밀봉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 전용봉투(종량제 봉투, 지자체가 제공한 봉투 사용가능)에 담아 보관 - (배출) 재택치료가 종료되고 3일(72시간) 이후 전용봉투에 보관 중인 일반쓰레기는 밀봉 후 다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상부 및 외부 소독하고 배출(이중밀봉),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는 소독 후 품목별 분리배출 ▶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봉투(또는 전용용기)에 넣어 상부 및 외부 소독하고, 재활용품은 표면 소독 후 배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안내 지침 참조) ▶ 음식물쓰레기는 해당 지역 기존의 종량제 배출방식(봉투, RFID, 칩 · 스티커 등)에 따라 배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처리 지침(제4-1판) 개정 내용 반영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18	[자가격리자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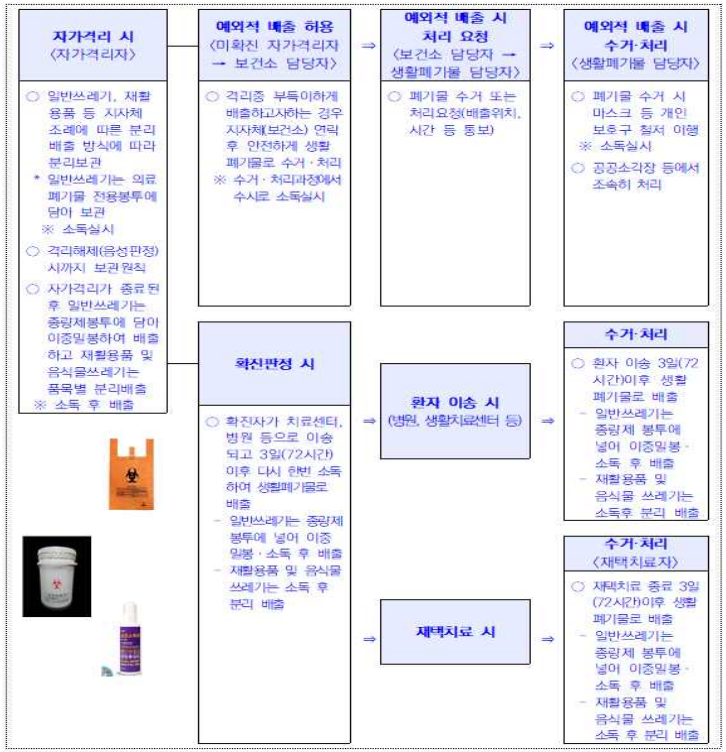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폐기물 보관·처리 체계의 예외적 배출 사항 추가 및 상황별 수거·처리 사항 안내
220	〈부록 13〉 (붙임1) 코로나바이러스-19 의료폐기물 관리 안내도 [관리체계도] 유역(지방)청 ○ 전용봉투·소독제 등 구매 ○ 비상시 폐기물 처리업체 연결 지원 ○ 자가격리 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업자 재정지원 심사 등	〈------〉 (----) ---------- 관리 체계도 [-------] 유역(지방)청 ○ ---------- ○ ---------- (삭제) ○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환경부 유역(지방)청 업무 명확화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224</td><td>〈부록 14〉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안내
□ 입국자 명단 통보 체계
(생략)
○ 해외 입국자 중 인천공항 외 공항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자체 지정 격리시설에서 14일 동안 시설격리
▶ 항만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 선원 등은 해수부 운영 격리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
* 단, 본국 귀한 목적으로 하선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자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시설격리 중 출국 희망 시 허용, 선사나 해운 대리점 등을 통한 이동수칙 준수 안내 및 출국확인
(신설)
* 인천공항 외 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시설격리가 필요한 자의 명단은 관할 검역소에서 검역소 관내 시도로 공유
<table><tr><th>단기체류 외국인</th><th>격리면제자</th></tr><tr><td>◦ 비자 타입이 B1, B2, C1, C3, C4의 경우</td><td>(생략)
② 입국 전 한국대사관에서 다음의 용무로 ‘격리면제서’ 사전 발급을 받은 경우
(생략)
(신설)
⑤ 입국자 중 해수부에서 제공한 격리면제자로 관할 검역소에서 ‘격리면제서’ 발급을 받은 경우</td></tr></table></td><td>□ ----------
○ ---------- 10일 ----------
▶ ----------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 ------
(삭제)
* 시설격리 중 중도퇴소는 해수부 시설 운영 지침에 따름
* ----------
<table><tr><th>단기체류 외국인</th><th>격리면제자</th></tr><tr><td>◦ -------
----
----------</td><td>② ------ 한국대사관(또는 관계부처)에서 ----------
⑤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 무증상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 發 입국자가 아닐 것
⑥ ----------</td></tr></table></td><td>〈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 부분 이동 및 상위 항목으로 조정
격리면제기간 조정
해수부 시설 소관 운영 지침 참고 안내
격리면제자 관련 예방접종완료자 조건 추가 안내</td></tr>
</table>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25	□ 해외 입국자 관리방안 ▶ 해외입국자 중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사항은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참조 ○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 및 검사 시행	□ ---------- (삭제) ○ ---------- 10일간 ----------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을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통합하여 삭제 〈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기간 조정
226	▶ 해외 입국자 검사 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감염병웹신고 비고란 "조사대상 유증상자 2"로 신고하고 확진검사결과 표기 * 유증상자로 공항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입국 후 3일 이내 전수검사를 시행하지 않음 (단, 4일 이후 증상을 보일 경우 검사 시행)	▶ ---------- * ---------- 1일 ---------- (-- 이후 ----------)	〈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기간 조정
226	○ 단기체류 외국인(항만 선원 제외)의 경우 지자체 단계에서 감시기간(14일) 시설격리에 따른 격리시설 운영 및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인천공항 외 공항으로 입국한 경우)	○ ---------- 감시기간(10일) ----------	〈해외출입국관리팀〉 격리기간 조정
250	〈부록 21〉 자가검사 대응 및 조치 방안 (붙임1) 코로나감염증-19 자가검사 관련 안내사항 □ 자가검사 개요 ○ 현재 조건부허가(4.23.)된 코로나19 자가검사용 제품은 항원검사방식으로,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는 개인이 채취한 비강도말 검체 내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구성 성분(단백질 등)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임	□ ---------- ○ 코로나19 ---------- 개인이 ----------	〈진단분석단〉 제품이 정식허가가 되고, 범위가 증상유무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부정확한 내용 삭제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50	□ 자가검사 대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 사용	□ ---------- ○ ---------- 사용	〈진단분석단〉 제품이 정식허가가 되고, 범위가 증상 유무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부정확한 내용 삭제
251	〈부록 21〉 (붙임2) 자가검사 관련 Q&A Q1. 증상은 없으나, 얼마 전 환자가 발생한 지역(구)에 방문하여 자가 검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1. 자가검사를 원하는 경우 자가검사 제품을 구매하여 자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동선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검사(PCR)를 받으셔야 합니다. 접촉자가 아닌 경우에도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사오니, 정확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Q1. ---------- A1. ---------- 합니다.	〈진단분석단〉 지침 상 단계별로 무료검사 상황이 변동되기 때문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 삭제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260
~
261</td><td>(신설)</td><td>〈부록 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부록 26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안내문(밀접접촉자용)]
귀하께서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이나,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실거주지 보건소의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필요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또는 앱)를 제시).
▶ 수동감시 관리 절차
① (밀접접촉 확인 시) 보건소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력 알리기,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② (PCR검사) 접촉자 분류 직후 검사 실시(음성 확인 시까지 자가 대기)
③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수동감시 조건 충족 시)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미완료자 또는 수동감시 조건 미충족) 자가격리 전환
④ (수동감시 기간 중)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차에 PCR검사▸ 시행
▶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 단, 지역별 방역 상황 등 고려하여 방역관(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격리해제 전 검사 등)
- 접촉일로부터 10일간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생활수칙 준수
▶ 검사 결과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⑤ (수동감시 종료) PCR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수동감시 해제
▶ 수동감시 대상 조건
① 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 예방접종완료자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해외 발급 증명서는 향후 순차적으로 인정할 예정)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예) 예방접종완료일: 9.1일, 2주째: 9.15일, 지침 적용일: 9.16일 0시부터
②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교정시설 등
▶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고위험집단시설 이외에서 확진자 발생 시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전파 및 중증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격리 가능
▶ 접촉자 분류 시 함께 통지

(이하 생략)</td><td>〈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통합에 따른 수동감시 안내문(밀접접촉자용/해외입국자용) 추가</td></tr>
</table>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62 ~ 263	(신설)	〈부록 2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 **부록 27**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안내문(밀접접촉자용)]** ◆ 이 안내문은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에 갈음하여 수동감시 대상이 되신 예방접종완료자**에게 제공됩니다. ◆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접촉자 분류 직후 및 6~7일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전환**됩니다. **[자가 모니터링]** ○ 수동감시 기간 중에는 **본인 스스로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 특히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타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시 반드시 관할 보건소(업무담당자)에 연락하여 증상 등을 알려주시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검사 등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자가격리자에 준하여 생활하여야 합니다.**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시 자차, 도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기타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을 자제합니다.** - 수동감시 기간 중 출·퇴근, 등하교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의 외출은 자제하고, 가정 내 머무르도록 합니다. 특히 다중이용 시설 등의 방문을 자제하여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접촉을 피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십시오.** -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한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두 팔 간격(2m) 거리를 유지합니다.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여 주시고 거주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수동감시 중 검사]** ❶ **접촉자 분류 직후, 6~7일차에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수동감시가 유지됩니다. ❷ 수동감시 중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PCR검사**를 받습니다. ▶ ❶, ❷ 둘 중 하나라도 PCR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즉시 자가격리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기존 대응지침 등에 따라 확진자 관련 조치가 시행됩니다. **귀하의 검사일은 _____년 __월 __일~ __월 __일,** **수동감시 기간은 _____년 __월 __일까지 입니다.** 담당보건소:_____ 담당자:_____ 긴급연락처:_____ (이하 생략)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통합에 따른 생활수칙 안내문(밀접접촉자용/해외입국자용) 추가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64 ~ 265	(신설)	〈부록 28〉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부록 28**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 **역학조사 정보 및 자료 입력 시 기본원칙** ○ 예방접종자(1 2차)는 확진자 밀접접촉에 따른 역학조사 시, 해외에서 입국 시 검역소 업무담당자 및 자택으로 이동 후 실거주지 보건소와 연락시 업무담당자에게 **예방접종증명서(전자증명서(COOV), 종이증명서, 예방접종스티커)를 제시(제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 이 외에도 감염취약시설 등 선제검사 시, 기타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필요 시 시설 관리자 등에게 제시하여 예방접종이력을 확인 받음 **1. 전자증명서(COOV):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1-1. (예방접종자)** 어플리케이션 (COOV)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발급: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또는 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 –설치 **1-2. (확인자)** 어플리케이션(COOV)에서 QR코드 스캔하여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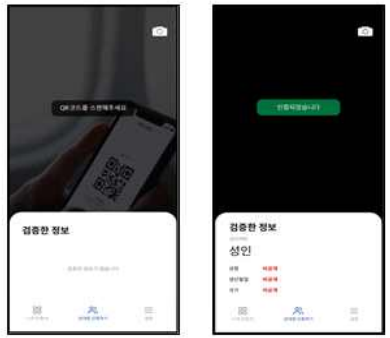 (이하 생략)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통합에 따른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안내 추가

<table>
<tr><th>쪽</th><th>현행(10-1판)</th><th>10-2판 개정(안)</th><th>개정사유</th></tr>
<tr><td>266
~
267</td><td>(신설)</td><td>〈부록 29〉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시스템 운영 현황('21.10.28 기준)

부록 29 생활치료센터 진료지원시스템 운영 현황('21.10.28 기준)

□ 생활치료센터 90개소 중 73개소 사용 중

<table>
<tr><th>구분</th><th>개소일</th><th>센터 수(시설명)</th><th>협력병원</th><th>운영현황</th><th>비고*</th></tr>
<tr><td>합계
(90)</td><td></td><td>총 90개소</td><td></td><td>73개소 사용</td><td>81.1%</td></tr>
<tr><td colspan="2">수도권</td><td>총 63개소</td><td></td><td>49개소 사용</td><td></td></tr>
<tr><td rowspan="10">중수본
(10)</td><td>21.07.10</td><td>아산 경찰인재개발원</td><td>아산충무병원</td><td>등록(7.10)</td><td>EMR연계(검토)/①</td></tr>
<tr><td>20.12.19</td><td>광주 DB인재개발원</td><td>분당제생병원</td><td>등록(12.19)</td><td></td></tr>
<tr><td>20.12.20</td><td>한반도통일미래센터</td><td>남양주한양병원</td><td>등록(12.20)</td><td></td></tr>
<tr><td>21.03.19</td><td>광주 고용노동교육원</td><td>김남병원</td><td>등록(3.19)</td><td></td></tr>
<tr><td>20.06.02</td><td>인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td><td>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td><td>등록(12.9)</td><td></td></tr>
<tr><td>21.07.08</td><td>건보인재개발원</td><td>제천명지병원</td><td>등록(7.8)</td><td></td></tr>
<tr><td>21.07.12</td><td>천인 관세국검관리연수원</td><td>천인충무병원</td><td>등록(7.12)</td><td>EMR연계(검토)/①</td></tr>
<tr><td>21.07.13</td><td>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td><td>평택박애병원</td><td>등록(7.13)</td><td></td></tr>
<tr><td>21.07.19</td><td>사회복무연수원</td><td>보은한양병원</td><td>등록(7.19)</td><td></td></tr>
<tr><td>21.07.19</td><td>근로복지공단인재개발원</td><td>진천성모병원</td><td>등록(7.19)</td><td></td></tr>
<tr><td rowspan="17">서울시
(36)</td><td>20.06.04</td><td>남산 유스호스텔</td><td>보라매병원</td><td>자체 시스템 이용</td><td></td></tr>
<tr><td>20.08.19</td><td>노원 대릉선수촌</td><td>서울의료원</td><td>자체 시스템 이용</td><td></td></tr>
<tr><td>20.11.19</td><td>은평 서울소방학교</td><td>은평성모병원</td><td>자체 시스템 이용</td><td></td></tr>
<tr><td>20.11.23</td><td>용인 SK아카데미</td><td>서남병원</td><td>자체 시스템 이용</td><td></td></tr>
<tr><td>20.11.28</td><td>성남 코미카연수원</td><td>서울 농부병원</td><td>자체 시스템 이용</td><td></td></tr>
<tr><td>20.09.09</td><td>노원 한전인재개발원</td><td>서울대병원</td><td>자체 시스템 이용</td><td></td></tr>
<tr><td>21.01.14</td><td>서울대생활치료센터</td><td></td><td>자체 시스템 이용</td><td></td></tr>
<tr><td>21.07.16</td><td>연세대학교 기숙사
(연세대우정원)</td><td>세브란스병원</td><td>등록(7.15)</td><td></td></tr>
<tr><td>21.04.19</td><td>삼성국제경영연구소</td><td>서울적십자병원</td><td>자체 시스템 이용</td><td>등록·종료(4.19)</td></tr>
<tr><td>21.07.07</td><td>국립국제교육원</td><td>녹색병원</td><td>등록(7.7)</td><td></td></tr>
<tr><td>21.07.09</td><td>소망교회수양관</td><td>보라매병원</td><td>자체 시스템 이용</td><td></td></tr>
<tr><td>21.07.12</td><td>청계센터(베뉴지)</td><td>건국대병원</td><td>등록(7.9)</td><td></td></tr>
<tr><td>21.07.14</td><td>세마을연수원</td><td>서울대병원</td><td>자체 시스템 이용</td><td></td></tr>
<tr><td>21.07.30</td><td>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td><td>경희의료원</td><td>자체 시스템 이용</td><td></td></tr>
<tr><td>21.10.05</td><td>동호로센터</td><td>삼성서울병원</td><td>자체 시스템 이용</td><td></td></tr>
<tr><td></td><td>자치구 생치 21개소</td><td></td><td>21개소 사용</td><td></td></tr>
<tr><td rowspan="6">인천시
(6)</td><td>20.09.09</td><td>인천 체육공단검정훈련원</td><td>인천성모병원</td><td>자체 시스템 이용</td><td></td></tr>
<tr><td>21.07.14</td><td>인천 SK무의연수원</td><td>한림병원</td><td>자체 시스템 이용</td><td>등록(7.14)·종료(8.1)</td></tr>
<tr><td>20.12.23</td><td>하나금융 하나글로벌캠퍼스</td><td>김포우리병원</td><td>등록(12.22)</td><td></td></tr>
<tr><td>21.07.19</td><td>청라백세요양병원</td><td>청라백세요양병원</td><td>등록(7.17)</td><td></td></tr>
<tr><td>21.07.21</td><td>포스코 인재창조원</td><td>나은병원</td><td>등록(7.21)</td><td></td></tr>
<tr><td>21.09.27</td><td>강화 신화유스호스텔</td><td>강화병원</td><td>등록(9.27)</td><td></td></tr>
<tr><td rowspan="11">경기도
(11)</td><td>20.08.24</td><td>이천 경기도교육연수원</td><td>다보스병원</td><td>등록(12.3)</td><td></td></tr>
<tr><td>20.08.24</td><td>고양 삼성화재글로벌캠퍼스</td><td>명지병원</td><td>등록(12.7)</td><td></td></tr>
<tr><td>20.11.26</td><td>용인 한화생명</td><td>용인·김남병원</td><td>등록(11.29)</td><td>협력병원변경(9.13)</td></tr>
<tr><td>20.12.04</td><td>이천 국방어학원</td><td>다보스병원</td><td>등록(12.4)</td><td></td></tr>
<tr><td>20.12.11</td><td>이천 LG인화원</td><td>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td><td>등록(12.11)</td><td></td></tr>
<tr><td>20.12.15</td><td>이천 SK텔레콤인재개발원</td><td>성남시의료원</td><td>등록(12.15)</td><td></td></tr>
<tr><td>21.07.14</td><td>경기대학교 기숙사
(경기대학교드림센터)</td><td>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td><td>등록(7.14)</td><td></td></tr>
<tr><td>21.01.04</td><td>동양인재개발원</td><td>부천세종병원</td><td>등록(12.28)</td><td></td></tr>
<tr><td>21.04.27</td><td>한국표준협회 인재개발원</td><td>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td><td>등록(4.26)</td><td></td></tr>
<tr><td>21.09.15</td><td>기아오산교육센터</td><td>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td><td>등록(9.13)</td><td>외국인 전용센터로 운영(10.15)</td></tr>
<tr><td>21.09.28</td><td>김포펜션기숙사</td><td>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td><td>등록(9.27)</td><td></td></tr>
</table>

(이하 생략)</td><td>〈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지자체 등 안내 필요 사항 반영</td></tr>
</table>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68	(신설)	〈부록 30〉 증상발생일 기준 7일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 양식(엑셀 서식) **부록 30** **증상발생일 기준 7일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 대상자 명단 양식(엑셀 서식)** □ **업무연락 예시** 수신 : 000 시군구 자가격리 모니터링 전담부서 제목 : 퇴소 후 자가격리(예정자) 명단 통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한 귀 시군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30606 공문('21.09.25.)에 따라 우리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중 **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적정성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상발현일 기준 7일차(무증상은 확진일 7일차) 환자 - 생활치료센터는 퇴소가능명단(이동수단, 퇴소복, 자가격리앱설치 가능여부 파악) 관할 시군구 통보(오전 11시까지) * 메일 발송시 발송자 성함, 연락처 기재 - 관할 시군구는 자가격리 주소지 확인, 자가격리 적정검토 후 회신(오후 4시까지) 붙임. 퇴소 후 관리 대상자 명단 1부. 끝. **생활치료센터 작성** / **모니터링 전담부서 작성** 연번 / 퇴소 예정일 / 퇴소 예정 시간 / 입소일 / 이름 / 생년월일 / 연락처 / 격리통지서상 격리 예정 자택 주소 / 증상발생일 (무증상자는 확진일) / 격리 해제일 / 자가격리 적정성 (예) 세종시 도움4로 O아파트 O동 O호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지자체 등 안내 필요 사항 반영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69	(신설)	〈부록 31〉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 부록 31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 [해외유입 외국인 격리입원치료비용 자부담 절차](21.7.28 기준) 1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공지 세부사항: • 상호주의 원칙 및 귀책사유 해당 해외유입 외국인 자부담 사전 안내 매월 말 홈페이지 공지 / 익월 1일부터 적용 주관: • 지자체 • 외교부 • 질병관리청 2 신고 및 보고 상호주의 원칙: • (신고) 입국 후 14일 이내 양성 또는 유증상으로 격리입원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신고 비고란에 반드시 입국 날짜 및 자부담 대상 여부 기입 • (보고) 자부담 대상인 경우 외국인 거주지 및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보고 귀책사유: 방역수칙 위반시 •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지자체 전담 관리 • (보고) 귀책사유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보고 PCR 음성확인서 허위제출시 •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방역당국 관리 • (통보) 방역당국은 관할 보건소에 자부담환자임을 통보 주관: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검역소 • 임시생활시설 • 질병관리청 3 확인 및 입원치료 통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치료비 자부담 환자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 •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해당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통보 주관: • 의료기관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4 격리 해제 등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인지 확인 •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주관: • 의료기관 •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해외입국한 외국인의 상호주의 해당 여부는 매달 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내용 확인 (kdca.go.kr → 알림 · 자료 → 법령 · 지침 · 서식 → 지침 → 공지사항) 또는 1339 콘센터▶ 문의 ▶ 1339 콘센터로 문의 시, ARS 음성안내에서 5번(기타)를 선택하고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 문의" (오전 9시 ~ 18시까지 상담 가능)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지자체 등 안내 필요 사항 반영 향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기준 지속적 현행화 필요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70 ~ 276	(신설)	〈부록 3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부록 32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지침 (이하 생략)	〈역학조사팀〉 환기 가이드라인 안내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77 ~ 282	(신설)	〈부록 33〉 도매·전통시장 방역관리 매뉴얼 **부록 33** **도매·전통시장 방역관리 매뉴얼** **1. 시장 관련 코로나19 집단발생 기본사항** **가. 매뉴얼 목적 및 대상** ○ (목적)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사전예방 및 집단발생시 체계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화 된 실무 지침 제공 ○ (대상) 현장대응업무 종사자, 지자체 관련 업무담당자, 시장 방역관리자 **사전 방역 준비** • 방역관리체계 구축 • 상인회 포함 관련부서 사전 연락망, 협조체계구축 • 종사자 명단 확보 및 주기적 현행화 • 시설관리 • 청소, 소독, 환기, 물품확보 ➡ **코로나19 발생 사전 예방**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 이용자 관리 • 입장 관리, 방역수칙 준수 • 종사자 관리 • 유증상자 관리, 공동폭로 기회 차단, 방역수칙준수 ➡ **시장 집단발생시 대응** • 상황 평가 및 준비 • 명단관리, 시공간분석, 증상상황 • 역학조사 • 확진자 역학조사 및 접촉자 분류 • 검사전략 • 접근성 향상, 일제/반복 검사 • 조치사항 • 공동현장점검, 시장폐쇄, 문제발견 [시장 발생 코로나19 방역 매뉴얼 개요] **나. 시장관련 집단발생 특성** ○ (유입 및 확산 경로) 시장 상인 감염 및 바이러스 유입 → 점포 내 확산 → 업무 관련 감염 전파 (→ 이용자 감염) ○ (확진자 특성) 이용자(손님) 감염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 종사자 및 종사자의 가족·지인 감염이며 유사 품목을 다루는 종사자 간 감염 흔함 ○ (유행 기간) 유행 지속기간이 길고, 대규모로 확산될 위험성 있음 **다. 시장 집단발생 위험 요소** ○ (공통노출기회) 공용화장실, 흡연장소, 휴게실, 샤워실, 공동식사 등의 공통폭로기회가 많고, 공용시설의 관리 상태 미흡 ○ (방역수칙 준수)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경소독, 상인·이용자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 준수 미흡 ○ (감염취약계층) 의료 접근성 저하되어 있고,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 일용직 (이하 생략)	〈역학조사팀〉 도매·전통시장 방역관리 매뉴얼 안내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83 ~ 286	(신설)	〈부록 3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문 **부록 34**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문** ▶ 보건의료위기대응 시스템 內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hcr.hira.or.kr) □ **시스템 기본 골격 이해** ○ 의사환자 등을 신고하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과는 별도로 운영 ▶ 환자의 첫 병상배정에서부터 격리해제(사망 포함)까지 이력을 관리하도록 설계 - 각각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입력하는 즉, **입력 내용과 입력 주체(사용자)**는 각각 **"첫 병상배정결과 입력(시·도) → 재택치료환자 관련사항 입력(보건소)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관련사항 입력(생활치료센터) / 의료기관 입원환자 관련사항 입력(의료기관) / +3 자가격리자 관련사항 입력(보건소)"**으로 구성 ▶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변이바이러스 관련 사항을 이 시스템을 통해 관리 중 - **주요 입력 세부사항**은 "▴첫 병상배정결과, ▴재택치료 시작일·생활치료센터 입소일·의료기관 입원일 및 +3 자가격리 시작일, ▴증상변화 등에 따라 전원(이송)보낸 내용(보낸 곳·보낸 날짜·보낸 사유, +3 자가격리 전환 포함), ▴격리해제 정보(격리해제 된 날짜, 격리해제 유형), ▴(해당시)사망 관련 정보"로서, -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입력**하는 만큼, 앞서 일어난 정보가 제때 입력되지 않거나 잘못 입력된 채로 방치되면 해당 환자의 정보를 제대로 입력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질병관리청 – 시·도 – 보건소 – 생활치료센터 – 의료기관) 간 적극적인 협조 필요** - 해당 시스템을 잘 활용한다면, 각 시·도/시·군·구 환자의 현재 위치와 상태(격리해제 여부) 등의 현황은 다른 수고(전화·이메일 등 수기 취합) 없이 가능 - **입력 주체별 사용 매뉴얼은 시스템 내 공지사항에 위치** □ **일일 신규 확진자 명단 업로드** ○ **(질병관리청)** 각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kdca.go.kr)을 통해 확진환자를 신고하면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에서 매일 24시 기준 확진환자 집계 → 확진환자번호 부여, **오전 10시 전후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담당자가 신규 확진자 명단을 해당 시스템에 업로드**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확진환자 확인 이후 첫 병상 배정 등의 업무 진행 중이거나, 환자가 이미 생활치료센터/의료기관에서 치료 중 또는 재택치료 중일 수도 있음 (이하 생략)	〈환자관리지침팀〉 코로나19 환자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안내문 추가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287	(신설)	〈부록 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추가 자가격리 대상자용) 부록 35 생활치료센터 퇴소 안내문 예시(추가 자가격리 대상자용) □ 퇴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그 동안 생활치료센터의 감염 예방 및 관리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소 결정 되었습니다. ○ 퇴소 통보를 받으면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시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 퇴소 절차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치료센터 퇴소 후에는 격리장소(_____)에서 자가격리*를 하여야 하고, 일시(_____)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 자가격리자, 가족, 동거인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숙지하시어 감염 전파 차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소 후에도 발열 또는 기침, 목 아픔,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거주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셔서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백신접종을 완료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이용 (일반택시는 백신접종완료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가능) * 격리장소 외 경유 또는 하차금지, 운전자만 동승하고 그 외는 탑승자제 ▶ (작성방법) 퇴소자 격리일시는 확진일(유증상자의 경우 증상발생일) 이후 1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재하고(보건소의 격리통지서 기준), 격리장소는 퇴소자의 실거주지(자가격리 장소)를 기재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지자체 요청에 의한 퇴소안내문 추가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Q&A			
297	3. 검사 Q1. 누가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생략)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역학적 연관성, 증상 유무, 지역과 관계 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별도공지 시까지)	3. ----- Q1. ---------- ▶ 일상회복 단계, ----------	〈진단검사운영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검사구분 변경
300	(신설)	Q15. 해외입국 또는 접촉 관련으로 격리기간 중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외의 보건소(선별진료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인정되나요? ○ 일반적으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이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외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때, 해외입국자 또는 접촉자임을 밝힌 후 검사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검사 결과서를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시 인정 가능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 : 지자체 판단에 따름	〈환자관리지침팀/해외출입국관리팀〉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외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검사 결과서 인정 관련사항 추가
303	5. 접촉자 및 확진환자 Q3. 접촉자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확진환자와 최종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격리(자가, 시설, 병원)를 실시합니다.	5. ---------- Q3. ---------- ○ ---------- 10일 ----------	〈환자관리지침팀〉 격리기간 조정

쪽	현행(10-1판)	10-2판 개정(안)	개정사유
310	6. 격리 및 격리해제 Q14. 격리면제서를 입국 전 발급 받지 못한 경우, 사후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격리면제 제도는 특정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간 격리로 입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대한민국 입국 전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6. ---------- Q14. ---------- ○ ---------- 10일간 ----------	〈환자관리지침팀〉 격리기간 조정
311 ~ 314	(신설)	Q18~Q26. 추가	〈중수본 생활치료센터관리팀〉 다빈도 민원/질의 발생 사항 Q&A 작성
315 ~ 323	7. 격리입원치료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참조 (신설)	7. 7일 입소 후 3일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 (삭제) Q1~Q34. 추가	〈환자관리지침팀〉 격리입원치료비 항목 삭제 및 7+3 (자가격리 준하는 관리) Q&A 작성
327 ~ 329	9. 청소 및 소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참조 (신설)	9.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삭제) Q1~Q9. 추가	〈환자관리지침팀〉 청소 및 소독 항목 삭제 및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Q&A 작성
333	11. 코로나19와 어린이 (신설)	11. ---------- 영아 및 어린이 Q3.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소아 등 특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는? ○ 본 지침에서 규정한 행정사항을 제외하고 의학적 판단에 관한 사항은 관련학회 지침을 준용합니다. ▶ (출처) 코로나19 대응지침 [신생아, 영아, 소아청소년], [중증환자] 등	〈환자관리지침팀〉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 영아에 대하여 관련학회 지침 준용 안내